

A101
51
v.344

연구보고 R344/1996. 11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 어업대책

옥 영 수 책임연구원

머 리 말

전통적으로 해양에 대한 기본사고는 자유이용이 근간으로 되어 왔으나 금세기 중반 이후 해양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분할 이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UN 해양법회의로 표출되었으며, 20년이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1993년 UN 해양법으로 발효되어 새로운 세계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나라를 둘러싼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어족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인접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옛날부터 어장 이용을 둘러싼 마찰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마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시대에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자유경제가 진전되어 각국의 어업세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발효된 UN 해양법의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는 한중일 간 어업회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UN 해양법 속에는 해양 관할문제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로운 규범도 포함되어 있어 전통적 어업방식에 익숙한 각국의 어업전략 수립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한중일 3국이 받게 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어업협상시 우리 나라가 취할 전략을 검토해 보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어업협상에 있어 참고자료로 다소나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 나라 주변해역에서의 어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199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제 2 장 한중일간의 과거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

1. 한일간 과거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	5
2. 한중간의 어업관계	17
3. 중일간의 어업관계	19

제 3 장 경제수역과 관련된 UN 해양법 및 일본, 중국의 동향 검토

1. 주요 UN 해양법 내용 검토	23
2.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된 일본의 동향 검토	30
3.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된 중국의 동향 검토	35

제 4 장 가상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각국 어업실태 및 이해득실 분석

1. 200해리 수역내 각국 어획실태	37
2. 각국의 상호 어획득실 비교(가상선 기준)	45

제 5 장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1. 업종별 어업경영 실태 및 피해율	51
2.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54
3. 시나리오 I에 의한 일본의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62

제 6 장 우리 나라의 어업협상 추진 방향

1.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중일간 쟁점사항	67
2. 한일 어업협상 추진 방향	71
3. 한중 어업협상 추진 방향	75

제 7 장 경제수역과 관련된 국내 어업 대책

1. 어선 감척	80
2. 효율적 어업관리제도(TAC제도)의 도입	84

부록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중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내용(해양법 제5부)	87
----------------------	----

부록 2 일본 어획가능량제도의 개념도

105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한일간 어업관계 약사	16
표 2-2 한중간 어업관계 약사	18

제 3 장

표 3-1 국제해양법의 주요 내용	25
표 3-2 국제해양법에 나타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종류	27
표 3-3 유엔해양법에 있어서 어업자원과 관련된 내용	29
표 3-4 서일본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상황	33

제 4 장

표 4-1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하의 각국 어획총량 실태 추정, 1994	39
표 4-2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 하의 국별 업종별 어획실태, 1994	40
표 4-3 업종별 200해리 외측 어장별 어획량실태 추정	42
표 4-4 업종별 200해리 외측 어장별 어획금액실태 추정	43
표 4-5 일본의 우리 나라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실태 추정, 1994	44
표 4-6 각국별 타국 200해리내 어획에 대한 상호 어획 득실 비교	46
표 4-7 각국별 상대 200해리 내에서의 평균 생산금액 및 부가가치액 추정	47
표 4-8 각국별 상대 200해리 내에서의 평균 조업척수 추정	49

제 5 장

표 5-1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52
표 5-2 한국 어업의 어업피해율(가상선 기준)	53
표 5-3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을 위한 변동비와 고정비 비목 구분	55
표 5-4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56
표 5-5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59
표 5-6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61
표 5-7 경제수역과 관련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63
표 5-8 일본어업의 어업피해율(가상선 기준)	64
표 5-9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시 일본 업종별 어업영향	65

제 6 장

표 6-1 한중일간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과 관련된 쟁점사항	68
표 6-2 한중간 어업협상에 나타난 양국간 주장	76

제 7 장

표 7-1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수익률	83
--	----

부 표

부표 1 경제수역과 관련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108
부표 2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수지 변화	109
부표 3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국 업종별 어업경영실태(1), 1994	110

부표 4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국 업종별 어업경영실태(2), 1994	111
부표 5 시나리오 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112
부표 6 시나리오 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113
부표 7 시나리오 I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114
부표 8 시나리오 I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115
부표 9 시나리오 II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116
부표 10 시나리오 II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117

그림 목 차

제 4 장

그림 4-1 우리 나라 주변의 각종 어업 관련 경계선	38
-------------------------------------	----

제 5 장

그림 5-1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57
그림 5-2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58
그림 5-3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59
그림 5-4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60
그림 5-5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61
그림 5-6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62
그림 5-7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일본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65
그림 5-8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일본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6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어업분쟁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주변 해역의 어업자원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데다가, 어업에 대한 한중일간의 소비 성향이 매우 높아 일찍부터 어업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간의 어업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서도 상호 이해가 얹혀 복잡하게 전개된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한말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앞서 어업분야에서의 침략이 먼저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 한일간의 어업문제는 ‘평화선’ 선포를 야기하여 양국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 평화선 이후 지지부진 하던 한일간의 어업협정은 5·16 이후 한일회담 조기 정상화에 따라 급진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전개된 양국의 어업관계는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

게 되었다. 즉, 1965년 양국의 어업협정 이후 30여년간 유지, 존속되어 오던 한일간의 어업관계는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세력이 과거 일본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변화된 데 따른 일본의 권리주장으로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 체제하에서 유지되어 오던 한일간 어업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될 경우 한일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어업문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상호 자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간의 어업상황이 변하고 일본에 의해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된 마당에 한일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운 어업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한일간의 이해득실은 각 해역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 경제수역을 유리하게 확정하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은 치열해 질 것이며, 경제수역 확정 이후에도 양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수역에의 출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일간에는 경계획정과 별도로 새로운 어업협정을 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상실될 어장과 당해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어업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업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보는 것은 200해리 경제수역 획정과, 경제수역 확정 이후 후속작업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어업협상에서 우리의 논의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한일간 200해리 경제수역 문제는 경계획정과 새로운 어업협정문제 외에 상당 부분 어장을 상실함에 따른 국내어업자에 대한 대책문제가 중

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할 것이다. 특히, 국내어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 어업노동력의 질적·양적 감소, WTO체제의 출범 등의 원인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200해리 경제수역과 같이 어장이 분할됨으로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악화될 경영수지를 해소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대책문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어장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될 어선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어선감축과 관련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대상업종, 대상규모, 지원조건 등의 검토와 더불어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어선원에 대한 전업대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업종별 영향분석을 통하여 한중일간 어업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 후 지속적 어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종 국내시책을 모색해 보는데 부차적 목적이 있다.

3. 연구범위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문제에 국한하였다. 즉,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영유권문제, 200해리 경계선문제 등 한중일 3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감정까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시일에 몇몇 측면만 고려하여 결정할 성질은 아니며, 또한 협상력에 의해서도 그 결정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 200해리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어업 외에, 광물자원 채취권, 해수를 이용한 조력발전, 해수 이용권 등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나, 현재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어업을 둘러싼 한중일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종합적 고찰도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어업자간에는 경계선과는 별개로 현재의 조업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부분적으로 있는 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범위는 경계선문제는 제외한 채 어업문제에만 국한하였다. 이는 한중일간 경계선협상과 어업협상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 2 장

한중일간의 과거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

1. 한일간 과거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

1.1. 일제시대 이전

한일간 어업문제는 고려시대부터 극성을 부렸던 왜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즉, 당시의 왜구는 대부분 서일본지역에 거주하던 일본 어민들로서 우리 나라 남해안지역으로 몰려와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어업을 하지 않을 때는 육지로 상륙하여 약탈을 일삼았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업문제가 최초로 외교문제로 비화된 것은 三浦의 개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였다. 즉, 세종 8년(1426년) 삼포의 개항을 계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로 건너왔는데, 이들은 무역관계로 건너왔지만 실은 이들 중에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海東諸國紀의 三浦禁約條에 대마도인들이 삼포에 와서 교역과 어업을 할 것을 청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후 이

들 대마도인들의 어로행위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삼포 개항 이후 우리 나라 연안에서의 일본인에 의한 어업은 점차 범위를 넓혀 1세기 가까운 기간 계속되다가 중종 5년(1510년)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중지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 연안에서 한일간에 다시 공식적인 어업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한말에 와서였다. 한말 일본의 어업침략은 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된 7년 후인 1883년 7월 6일 양국간에 체결된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일명 朝日通商章程)’에 의해 일본인이 朝鮮通漁權을 획득하고 나서였다. 이 장정에 의하면 비록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의 4개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양국간 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일본에 어업을 허가하였다. 동 장정은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입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나라 어선이 일본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의 어선세력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을 뿐만아니라 설령 충분한 어선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태여 상대적으로 자원풍도가 빈약한 일본 어장에까지 가서 조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조약은 한말 우리 나라가 맺은 모든 국제협약이 불평등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게 된다. 즉, 조일통상장정이 조인되던 해 7월 25일에는 조선에 出漁하는 일본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일명 日本人漁採犯罪條規)’라는 긴 條規가 체결되었다. 이것은 일본측의 요구에 의하여 성안된 조규로서 명목상으로는 처벌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어민의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하여 그들이 조선의 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으려는데 목적을 둔 보호규정이었다. 이것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시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旗國主義와 비슷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일통상장정에 의해 4개도 연안의 어장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안의 황금어장은 급속도로 일본의 영향하에 들어갔다. 즉, 1888년 ‘仁川海面暫准日本漁船捕魚額限規則’에 의해 인천을 중심으로 남양에서 강화까지의 연안어장이 개방되었으며, 1889년 11월 12일에는 1883년 체결되었던 조일통상장정의 시행세칙적 성격을 띤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일명 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우리 나라 연안에서의 어업침탈행위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후 더욱 기세를 부렸다. 즉, 1900년 2월 14일에는 동해에서의 러시아 포경허가에 자극을 받아 일본도 포경허가를 따내었는데 조업구역은 일본인 통어구역 중 전라도를 제외한 3개도였으며, 허가기간은 3년간이었다. 또 동년 10월에는 일본인통어구역의 확장을 요구하여 승인받았는데, 확장된 통어구역으로서 경기도 일원이 선택되었다.

경기도가 일본인 통어구역에 포함되므로 우리 나라 연안은 충청, 황해, 평안도의 3개도만 제외한 나머지 전연안이 일본인 통어구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3개도도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일본군대에 어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통어구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앞서 1900년 경기도를 일본통어구역에 포함시켰던 것과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3개도도 모두 개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은 우리 나라를 점령하기에 앞서 한반도 주변 三面의 어장부터 모두 점령하게 되었다.

일본의 어업침탈과정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조업실태를 보면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직후인 1890년 부산항에서 통어수속을 밟은 어선수가 718척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통어수속을 밟지 않고 불법어업에 종사한 통어선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어선세력은 청일전쟁 이후 더욱 늘어나 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는 공식통계에 의한 것만 1,000~1,600 여척에 이르렀으며, 불법통어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규모는 그 2~3배에 달했다고 한다.

1905년 통감정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우리 나라 연안에서의 일본인 통어 외에 새로운 형태의 어업침탈이 시작되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이민형지배의 일환으로서 어업이주가 장려되었는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어업종사자들로서 어업침탈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좀더 깊은 시각으로 이해하면 일본제국주의의 선도병에 다름없었다.

1.2. 일제시대

한일합방에 의해 일본의 어업침탈은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한반도 어업진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주어촌의 건설을 들 수 있다. 한말 일본의 우리 나라 어업진출은 대부분 계절적조업에 의한 通漁漁業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저성능어선으로는 한 어기의 조업에 소요되는 왕복경비와 시간이 너무 과다하였으며, 이동중 해난사고의 위험도 뒤따랐다. 더구나 한반도 침탈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어촌에 직접 파괴를 필요로 있었을 뿐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본 연안어촌의 과잉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이주어촌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이주어촌은 원래 러일전쟁 무렵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이주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어촌의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인 이주어민수가 늘고 일본어업제도를 모방한 각종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일본인의 세력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즉, 1912년 일본인 출어척수가 5,600 여척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뒤인 1922년에는 15,000 여척으로 증가하는 등 어업세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20년대를 전후하여 어선의 동력화가 활기를 띤 이후 일본의 어업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연안에서의 일본 어업세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자원감소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선 기술우위의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남획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나라 어업자원은 크게 감소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몇 가지 어업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즉, 어업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911년 일부연안구역에서의 트롤금지구역, 어업 질서 및 자원보호조치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어구어법과 동력어선의 증가에 따라 그 실효를 다할 수 없게 되자 1929년 「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규칙은 한반도에서의 어업자원을 남획일변도에서 적정하게 유지보호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롤어업금지구역은 해방후 한일간 어업회담의 최대현안이었던 평화선문제에 대한 한일간 이론논쟁이 치열할 때 한국측에 의한 평화선 존립배경의 하나로써 제시되기도 하였다.

1.3. 해방 이후

1.3.1. 평화선 선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전후 일본의 어업활동을 규제하였다¹. 맥아더라인의 설정은 일본어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주요어장을 활동무대로서 조업에 임하고 있었던 어선들이 맥아더라인 안에서만 조업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미군에 의한 신조선건조와 신규허가가 남발되어 어선간 조업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 일본 연근해의 어업자원은 급

¹ 일본에 맥아더라인을 설정한 표면적 이유는 군사상의 목적이었으나 실제 목적은 2차대전 전에 일본어선이 세계 5대양의 도처에서 분별없는 남획을 자행하여 어업자원보호에 많은 문제를 유발시킴으로써 전후에는 더이상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를 가하자는데 있었다.

속히 감소되어 일본어업자들은 맥아더라인의 확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차례의 어장확장이 이루어졌으나 미주둔군은 일본서 쪽인 동해와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확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측 어장은 고급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한국내의 사정이 군정, 건국 초기의 정치혼란, 6·25동란 등으로 해양에서의 어업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여 일본어업자들은 맥아더라인을 넘어 불법어업을 일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1951년 일본에 대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는데, 일본은 1952년 4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을 염두에 두어 이에 불응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어업의 직접 이해당사국인 일본과의 어업교섭가능성이 지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의 발동전에 어족보존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².

이러한 배경으로 1952년 1월 18일 4개항에 이르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선'이었다. 이 선언의 법적 배경은 당시 중남미 각국에서 선포하고 있던 해양자원보존 및 대륙붕에 관한 선언과 미국에서 선포한 대륙붕선언에 토대를 두었는데 동 선언의 내용은 어업자원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광물까지도 포함한 자원의 보호, 보존 및 이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주변의 광범위한 수역이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들 해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선언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한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평화선은 일본을 매우 당황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 선언이 공해자유의 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

²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나면 맥아더라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일본 어선은 아무런 구속없이 한국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고, 미국은 한일간 심각한 어업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1952년 9월 27일 '클라크라인'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표면적으로는 한국동란에 대한 전쟁수행을 위해 적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평화선 선포로 인한 한일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다.

평화선 선포로 일본측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은 선망어업과 이서저인망어업이었다. 선망어업, 특히 고등어선망어업은 대마도연안에서 제주도연안에 이르는 해역이 주조업어장이었는데, 어장의 상당부분이 평화선과 클라크라인 안쪽에 위치하였다. 또 한국 서해안 어장을 주조업어장으로 하는 이서저인망어업은 이 수역에의 조업가능여부가 업계의 생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이서저인망어업의 규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평화선내를 주조업어장으로 삼은 일본의 어선규모를 보면 출어어선 총척수 1,753 척중 트롤 및 저인망어업이 1,028척이 되었으며, 승선원수는 32,000여명중 12,000여명, 연간 어획량은 217천 M/T중 134천 M/T에 이르고 있었는데, 동 해역에서의 총어획량은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과 맞먹는 규모였다.

1.3.2. 어업협정 체결 과정

한일어업회담은 한일회담에 포함되어 1951년 예비회담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와중에 평화선이 선포되자 일본은 이를 핑계로 1952년 4월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을 결렬시켜 버렸다. 따라서 어업회담도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데, 1년여 후인 1953년 5월 제2차 한일어업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어업회담이 평화선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 논의로 결렬된 반면 제2차 한일어업회담은 양국간의 실제 어업문제에 많이 접근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제2차 회담 역시 근본적으로는 평화선에 대한 일본측의 조업불가 해소 주장과 평화선의 정당성을 내세운 한국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웠다.

당시 일본은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의 한일간 어족보호문제를 주관점으로 내세웠으며, 이와 동시에 어업에 관한 자료수집과 통계 및 자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한일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주장은 평화선에 의한 한국측해역의 입어금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저어자원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어로방법은 어획강도가 높고 한국에 비해 어선세력이 우세했던 트롤어업과 이서저인망어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어자원에 대해서는 어획강도를 증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평화선 내에 대한 일본의 어업침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깊이 숨어 있었다.

제2차 한일어업회담은 보다 실제문제에 접근을 하였으나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이 나고, 같은 해 10월 6일 제3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3차 어업회담은 久保田 망언이라는 유명한 해프닝으로 인해 결렬되었으며, 이후 일본어선들의 평화선 침범과 한국측의 나포가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1958년 4월 15일 제4차 어업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이때는 재일동포 복송문제로 결렬되었다. 또한 제5차 어업회담은 1960년 10월 25일 개최되었으나 일본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이 역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5·16에 의한 군사정권은 한일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1961년 10월 20일 개최된 제6차 한일어업회담부터는 급속하게 논의가 진전되었다. 제6차 어업회담 이후 실무회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측은 1963년 7월 최초로 평화선 철폐를 제시하는 대신 어족보호를 위한 40해리 전관수역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40해리 전관수역 외측에 공동규제를 목적으로 한 특정수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어업자원조사와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들이 주장한 12해리 전관수역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회담은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그 후 1964년 11월 3일 개최된 제7차 한일회담 때까지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 주장하였으나 제7차 회담에서 양국은 협정의 기본골격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3일 양국 외상회담에서 어업전관수역과 어업규제에 대한 2개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보완사항 및 어업공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합의되어 동년 6월 22일 오랫동안 끌어왔던 어업협정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1.3.3. 어업협정의 내용

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양당사국의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설정이며, 둘째가 전관수역밖에 대한 공동규제수역 설정, 셋째가 기국주의에 의한 단속 및 재판관할권 행사이다.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어업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공동규제수역은 어업전관수역과 비규제수역인 공해의 중간수역으로서 애당초 한국측이 전관수역으로서 주장하였던 곳이었다.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로서는 충분한 과학적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기선저인망어업, 기선선망어업,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어업에 관하여 잠정적 규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기국주의는 각국의 협정위반어선에 대해서 어선의 소속국가가 단속 및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국주의 역시 일본측에 의해 주장되던 것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일본이 기국주의를 주장한 배경은 협정체결 이후 규제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일본측에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국의 단속권을 강화하기 위한데 있었다. 한국측은 상호 위반사항을 통보하되, 상대국의 감시선에 단속공무

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보완사항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어업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일본어선의 척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어선들은 1년 평균 연평도근해(조기 5~6월) 630척, 제주도 동방근해(고등어, 전갱이 4~12월) 4,200여척이 불법어업을 자행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동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우리 나라의 어선척수가 1,300여척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해 볼 때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1.3.4. 한일 어업협정 이후의 한일간 어업관계

한일 어업협정 체결후 한일간 어업관계는 상호 협정위반 어선이 지속적으로 존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까지 별다른 분쟁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한국트롤어선의 북해도 출어를 계기로 다시 한일간 어업관계는 복잡하게 얽히들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 나라 트롤어선이 북해도 주변 공해상에 신어장을 개척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즉, 우리 나라 트롤어업은 1960년대말 북양어장이 개척된 이후 1970년대초 베링해와 캄차카반도 근처어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77년 미국과 구소련이 각각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게 됨에 따라 갑자기 어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 대체어장으로 개발된 곳이 북해도 주변어장이었다. 이곳은 우리 나라와 거리가 가까워 북양출어 대형트롤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형급 트롤선까지 가세해 조업이 빠른 속도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제주도수역에서는 우리 나라 어업자들과 일본 저인망 어업자간에 분쟁이 자주 야기되어 양국 어업실무자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어업실무자 협의를 통해 1980년 11월~1983년 10월까지 '북해도 연안과 제주도 연안 조업 자율규제에 관한 3년간의

한일 정부간 서한에 의한 합의사항(일명 제1차 조업자율규제)³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규제의 내용은 당시 북해도 주변에 출어하고 있던 한국 측 트롤어선을 당초 23척에서 17척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1983년 10월에는 제1차 조업자율규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983년 11월~1986년10월 3년간 제2차 조업자율규제가 실시되었다. 제2차 조업자율규제의 내용은 제1차 규제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제2차 조업자율규제기간이 끝나가는 1986년 북해도어장을 중심으로 한일간 조업분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1987년도에 개최된 한일 어업 실무자 회의에서는 양국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즉, 일본측은 종래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12해리 어업전관수역안을 버리고 각국이 연안에서 40~50해리까지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하되 과거 어업실적을 인정해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동시에 기국주의를 포기하고 연안국주의로의 변경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한일 어업협정 당시 한국이 주장하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행어업규제조치는 상호 존중하되 기국주의는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 주장의 반전은 그 동안 양국의 어업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며 결국 양국은 1987년 10월 5개항의 합의사항³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 12월에는 제3차 조업자율규제가 만료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자율규제조치기간을 1994년 12월까지 다시 3년간 기간연장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자율규제조치기간을 다시 2년간 연장하여 1996년 12월까지 효력이 존속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 이루어진 최근의 자율규제조치는 북해도 지역의 한국 트롤어선을 종래보다 더 감축시키는 대신 일본은

³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 트롤어선 감축, 제주도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일본 어선 감축, 어업에 관한 공동지도단속, 서일본 연안에서의 한국 조업자율규제수역 설정, 제주도 주변수역을 제외한 한국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조업규제.

제주도 수역에 출어하는 이서저인망의 허가척수를 감축시키도록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일간에 있어서 어업문제를 둘러싼 오랜 역사적 마찰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한일간 어업관계 역사

구분	어업관계 역사
한일 어업 협정 이전	○ 한일간 어업문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대두. 이후 한말에는 대규모의 어업침략이 이루어져 한반도 침략에 앞서 주변해역에 대한 침략이 먼저 이루어졌음. ○ 평화선 선포(1953) : 1946년 설정된 맥아더라인이 폐지됨에 따라 일본어선의 침입이 빈번하여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 평화선 선포 ⇒ 어업자원 보호
한일 어업 협정 체결	○ 어업협정 체결(1952~1965): 7차례의 협상을 거쳐 1965년 체결 ○ 주요내용 - 어업전관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는 자국의 어선만 조업(오늘날의 영해 범위)(일본안) - 공동규제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40~50해리 범위 내의 수역으로서 제주도 수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우리측에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우리측 전관수역안). - 기국주의(우리 나라는 연안국주의를 주장)
한일 어업 협정 이후의 한일간 어업 동향	○ 조업자율규제 - 1980년 우리 나라 어선의 북해도 인근 공해 출어를 계기로 한일 간 '3년간 조업자율규제'에 합의, 이후 수차례의 협의 하에 이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움직임 - 1987년부터 종래의 어업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일본측으로부터 대두. - 주된 개정 요구내용은 ① 어업전관수역을 40~50해리로 확장 ② 기존의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변경. - 우리의 입장 : 기왕에 체결된 어업협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업자들간 분쟁이 격화되는 곳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업시기, 조업척수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제시

2. 한중간의 어업관계

한중간의 어업관계는 한일간의 어업관계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중간의 어업이 본격적인 마찰을 보인 것은 청대 이후의 일로 보이며, 남해안에서 삼포왜란 이후 일본에 의한 어로가 쇠퇴한 것과 때를 맞추어 서해안에서는 청인에 의한 불법어업이 점차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9세기 후반 고종조에 들어와서는 내침규모가 점차 대규모화되었으며, 1876년 개항 직후에는 때를 지어 왕래하면서 어로를 차단하고 어구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연안에 상륙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등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2년 8월 23일 한중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中國朝鮮商民水陸章程) 제3조에는 한중간의 상호 어로권 획득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근대에 있어 외국에 부여된 최초의 연해 어업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은 한국 서해안과 중국 산둥성 연해에서의 상호 입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연해에서의 한국 입어는 앞서 일본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 어업 상황을 살펴볼 때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의한 한국에의 입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결국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에 대해서도 통어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1883년의 조일통상장정이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쥔 때까지 한반도 연해 출어에 극성을 부렸는데, 한 어기의 출어척수가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척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침과 더불어 해방 이후에는 상호 적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중간의 어업관계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상호 적대관계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양국 어선의 직접적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서해안의 조업자제선이 바로 그것이다. 즉, 우리 정부는 서해해역에서 중국과 특별한 수산 또는 해양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일 어업협정선의 동쪽 30마일에 자체적으로 조업자제선을 설정하여 그 서쪽으로의 출어를 막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 개혁과 더불어 중국 어선은 우리 나라 연해로 대거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1992년 한중간의 국교 수립과 더불어 한중간의 어업협정 체결은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중국 어선의 한반도 내어가 급증함에 따라 한중간에는 민간차원에서의 어업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즉, 한중

표 2-2 한중간 어업관계 역사

구분	어업관계 역사
해방 이전	○ 최초의 한중간 어업마찰 -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 : 1882년 8월 23일 → 형식적으로는 상호입어였으나, 중국의 한반도 침략조약 ○ 청일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한반도연해 출어에 극성을 부렸음.
해방 이후	○ 해방 이후에는 상호 적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중간의 어업관계는 단절 : 특히 우리 정부는 양국 어선의 직접적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서해안의 조업자제선을 설치 ○ 1980년대 이후 중국개혁과 더불어 중국어선의 우리 나라 연안 침입 증가 : 1992년 국교 수립되었으나, 어업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 ○ 민간차원에서의 어업관계는 조금씩 개선 : 1988년 12월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어업협회간에 민간어업협정 체결 →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협의’가 조인 : 1988년 12월 역시 우리 나라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어업협회간에 ‘긴급피난 및 안전조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

간의 국교 수립 이전인 1988년 12월 우리 나라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어업협회간에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협의’가 조인되었는데, 이것은 1992년 6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한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1992년 6월에는 동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는 합의서 유효기간을 다시 1차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협의와 마찬가지로 1988년 12월 역시 우리 나라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어업협회간에 ‘긴급피난 및 안전조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 협의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한중간의 국교가 수립됨을 기화로 이 사안은 양국간 정부로 창구가 바뀌어 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에 나타난 한중간의 어업관계 약사를 표로 나타내 보면 <표 2-2>와 같다.

3. 중일간의 어업관계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적 팽창의 길을 달리던 일본 군국주의는 어업에 있어서도 팽창을 거듭하여 한국을 비롯한 중국 연안에 있어 많은 불법어선들을 출어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어장진출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청일전쟁의 승리후 대만 병합과 더불어 대만 연안과 중국 동해안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일본은 대만, 중국, 한반도, 일본에 둘러싸인 황해 및 동중국해를 명실공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일간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버렸다. 즉, 일본은 미군에 의한 피점령지가 되어 버렸던 대신 중국은 잠시 국민당 정권 이후 곧 공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대관계가 되어 자연 일본 어선들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적대관계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어선들이 중국연안에서 나포되기에 이르렀는데, 나포 구실은 한국의 '평화선'에 앞서 선포되었던 중국의 '마라인' 침범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어업관계자들은 중국과 어업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대만 사이에 체결되었던 「日華平和條約」 때문에 일중간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53년 중일무역촉진의원연맹대표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민간어업자들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중국측의 민간교섭 승인이 난 것과 때를 맞추어 일본측은 교섭창구로서 「일중어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어업협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일 협상의 창구로 삼았는데, 이 위원회는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 중일간에는 1955년 1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협상을 벌일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여 동년 6월 13일 민간어업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동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당초 일본측은 한국측에 대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해자유의 원칙을 앞세우고 영해 3해리를 주장하였던데 비해 중국측은 일본 어업의 침략적 성격을 비판함과 아울러 상호평등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중국측은 해양분할안을 주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담이 쉽게 타결되지 못하고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으나 결국 양보를 하고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중일민간어업협정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중국 연안에 대한 기선저예망 어업금지수역의 설정이고, 두번째는 기선저예망어업금지수역 외의 수역 중 중일간 어장경합이 심한 곳 6곳을 선정하여 어구를 지정하되 각 어구내에서의 조업기간이나 쌍방의 출어어선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였는데, 1958년 6월에 이르러서는 일본측의 연장 희망이 중국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후 5년간 무협정인 채로 양국은 조업에 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

업자들간 부분적인 마찰이 있었으나 양국은 1955년 어업협정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조업에 임하였으므로 큰 마찰은 없었다.

1963년 중일간은 종래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1963년에 체결된 중일 어업회담의 중요내용을 보면, ① 중일간 출어어구 6개소의 설정, ② 제3,4,6어구의 조업척수는 중국어선의 신장을 고려하여 쌍방 평등하게 100척 정도로 설정하며, 제1,2,5어구는 종래대로 함, ③ 제4어구는 도미 금어구로 하고 금어기간은 10월을 제외한 연중으로 함, ④ 긴급피난항의 설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일간의 어업협정은 1970년 선망어업이 포함되고 유효기간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기본내용은 변하지 않은 채 1975년 정부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2년 중일간 국교 수립을 계기로 민간어업협정은 정부간 어업협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1975년 8월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한 협정수역은 중국측의 군사경계선, 기선저예망 어업금지선 및 군사작전선 이북의 황해, 동중국해 수역으로 하였으며, 규제초치로는 600마력 이상의 기선저예망 어선 및 660마력 이상의 선망어선에 대한 특정수역에서의 조업규제, 휴어구설정, 보호구에 있어서의 특정기간의 척수제한, 유어의 혼획제한, 망목규제 등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해리 경제시대가 도래하자 일본은 중국측의 태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1955년 민간어업협정 당시부터 중국은 어장 분할안을 매우 강도높게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측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기선저예망어업에 있어서 휴어구의 기간연장, 보호구의 확대 및 신설, 척수제한의 강화 및 마력규제구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의 어선명부와 조업위치를 매

년 중국에 통보하는 등 부속서의 수정만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즉각 이에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3 장

경제수역과 관련된 UN 해양법 및 일본, 중국의 동향 검토

1. 주요 UN 해양법 내용 검토

1.1. 국제 해양법 협약의 체결 과정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논의는 1945년 트루만 선언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트루만 선언이란 ‘영해 밖의 대륙붕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해저 200m 이내 대륙붕의 지하자원에 대한 권리는 연안국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트루만 대통령에 의한 이 선언은 일찍부터 해양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남미제국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대륙붕이 넓게 발달되어 있었지만 남미에 있어서는 대륙붕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남미국가들은 200해리 어업수역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1958년과 1960년의 1, 2차 해양법 회의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당초에는 어업자원만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논의목적이었으나 국제회의의 흐름이 연안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제약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자 단순한 어업자원관할권에서 벗어나 영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0해리 영해’, 혹은 자연자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200해리 세습수역(Patrimonial Sea)’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던중 1972년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해를 넘어 경제수역(Economic Zone) 설치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도 어업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수역의 설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제3차 해양법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국제연합 해저위원회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원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경제수역 논의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논의에 동참하기에 이르렀으며,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의되었다. 이후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이 제의는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모든 경제적 주권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성립하게 되었다⁴.

이와 같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국제해양법의 한 내용이 되고 있는데, 국제해양법은 1973년 제3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1982년 찬성 130개국, 반대 4개국, 기권 17개국의 압도적 표결 결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찬성국 중 60개국의 국내비준이 완료되는 시점을 발효일로 삼았는데, 그 결과 효력 발효일은 1993년 11월 16일이 되었다.

⁴ 문준조·이용일, 「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의 해양관련법 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5, pp. 25~26.

1.2. 국제해양법의 내용

1.2.1. 전체 내용

표 3-1 국제해양법의 주요 내용

분류	제 목	주 요 내 용	조문범위
I	해양법 소개	-용어의 정의와 범위	1
II	영해와 접속수역	-영해의 정의와 제약, 영해에서의 무해통행 -접속수역의 정의와 내용	2~33
III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통과 및 무해 통행	34~45
IV	군도와 관련된 사항	-군도의 기준 -군도에서의 무해통행권	46~54
V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와 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고도회유성어종 및 포유동물의 이용	55~75
VI	대륙붕	-대륙붕의 정의 및 권리 -해저케이블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6~85
VII	공해	-항행, 해적행위 등에 관한 사항 -공해상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86~120
VIII	도서	-도서의 성격	121
IX	폐쇄 및 반폐쇄 바다	-정의 및 인접국간의 협력사항	122,123
X	내륙국의 자유항행권	-내륙국의 바다 접근권 -관세 및 시설권	124~132
XI	지역	-지역 해양자원 관리 -실시방법	133~191
X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지구전체와 각 지역간의 협조 -실행 및 보호조치 -다른 국제법과의 관계	192~237
XIII	해양과학연구	-국제협력 -해양과학연구의 실시 및 촉진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연구기구 및 장치	238~265
XIV	해양기술개발 및 이전	-해양과학기술 센터설립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266~278
XV	분쟁조정	-분쟁조정방법 -제한 및 예외규정	279~299
XVI	일반규정	-신뢰 및 권리 남용 -해양의 평화적 이용 등	300~304
XVII	최종규정	-UN해양법의 채택, 수정, 폐기 등	305~320

국제해양법은 총17장, 9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으며, 17개 장에 들어 있는 조문은 320개로 매우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영해, 공해, 국제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해양의 과학적조사,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 분쟁해결 등 해양문제 전반이 포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국제해양법의 내용은 <표 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이중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는 것은 5장이라고 할 수 있다.

1.2.2. 해양 관할과 관련된 내용

국제해양법에 의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종류는 <표 3-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영해(Territorial Sea)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권이 미치는 것은 하나 영토(territorial land)와는 달리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인정해야 하며, 해협의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통항을 배제하지 못하는 등 다소 주권이 제약받고 있다. 이때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란 외국선박이 해당 연안국의 권리를 해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은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관계 법령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필요할 경우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연안국의 경제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외국선박에 대한 항해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며, 어업권 중에서도 대양을 오가는 고도회유성 어종(예: 참치), 포유류(고래, 물개 등), 소하성어류(예: 연어)는 연안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비록 당해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내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표 3-2 국제해양법에 나타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종류

구 분	범 위	내 용
영해 (Territorial Sea)	영해기선*(territori al base line)으로 부터 12해리 내에 설정.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자원권, 국가안전 에 관한 권한 등 주권에 준하는 광범위한 권리가 포함됨.
접속수역 (Contiguous Zone)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내에 설정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관 제 법령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국 가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필요할 경우 에 설정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 설정	연안국의 경제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서, 경제 권의 내용으로는 어업권, 해수, 해풍 등을 이용 한 에너지권, 해저자원 탐사 및 이용권, 환경보 호권 등을 모두 포함. 의의는 어류 등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해저·지 하의 광물 등 무생물 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자 원에 대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됨. 따라서 종래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흡수됨.
대륙붕에 관한 규정	대륙붕	UN 해양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200해리 경제수역이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짐.

* 영해기선이란 대체로 영토의 끝을 의미하며, 섬의 경우에는 UN 해양법에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음.

제한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해양법협약 제55~58조에 나타나
고 있는 바와 같이 영해를 넘어 영해기선으로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항해 및
그 상공 비행은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이 때
배타적 권리·관할권에 속하는 것은 어류 등 생물자원뿐 아니라 해저·
지하의 광물 등 비생물자원, 해수자원 또는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거나

풍력에 의한 에너지자원까지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그대로 흡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이나 마주보고 있는 나라들의 거리가 도합 400해리가 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경계확정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고 모호한 표현이 다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수국간의 경계확정은 원칙적으로 등거리선이 제시되고 있으나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경계확정에 관련된 국제판례는 당해 수역의 거리, 해안선의 형태, 길이, 자원이용현황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1.2.3. 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항은 61조에서 68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61조에는 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해 62조에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63조에서 68조까지는 특정어족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표 3-3>.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반드시 어획가능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 어업질서가 양적관리제도(쿼터시스템)로 변환되어가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획가능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어업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 62조의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자국의 어획범위를 넘는 잉여어획가능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하게 되어

있으며, 입어허용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입어허용시 연안국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沿岸國主義는 현재 한일간의 어업체제가 旗國主義로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63조 이하에서는 특정어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63조에는 다수국이 경합하는 어종에 대해, 64조에는 고도회유성 어종이, 65조에는 포유동물이, 66조에는 소하성어종이, 67조에는 강하성이종이, 68조에는 정착성어종이 언급되어 있다. 이중 다수국이 경합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당해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어족에 대해서도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해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표 3-3 유엔해양법에 있어서 어업자원과 관련된 내용

구 분		내 용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생물자원의 보존	○ EEZ내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 ○ 과학적증거를 고려하여 적정생물자원을 유지
	생물자원의 이용	○ 잉여량에 대해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 ○ 입어허용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 ○ 연안국주의의 준수
특정어족에 관한 사항	다수연안국이 경합하는 어종	○ 지역기구를 통하여 당해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존하도록 노력
	고도회유성 어종	○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
	포유동물	○ 보존을 위해 최대한 노력 ○ 고래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노력
	소하성어종	○ 소하성어족 기원국의 이익과 책임
	강하성어종	○ 강하성어족의 조업범위
	정착성어종	○ 정착성어족의 적용배제

2.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된 일본의 동향 검토

2.1.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

제1, 2차 해양법회의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200해리 경제수역문제는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12해리 영해나 대륙붕문제는 대체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문제는 찬반이 분분하였다. 즉,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문제는 각국별로 이해가 크게 상충되었기 때문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200해리 경제수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구소련을 비롯하여 해양범위가 넓은 남미, 동남아시아 각국이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나라들은 해양범위가 좁은 유럽 각국과 원양국인 일본 등이었다.

한편 UN 해양법회의가 진행중이던 197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나라들 중 선두격이던 미국은 북태평양에서의 어업자원보존을 이유로 ‘어업보존관리법(Fishery Conservation Management Act of 1976)’을 통과시켰다. 이는 실제적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태평양에서 많은 어획을 하고 있던 일본, 구소련을 비롯한 한국, 폴란드 등과 같은 원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미국이 어업자원보존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수역과 어장을 맞대고 있던 구소련도 이의 대응책으로 200해리 어업수역⁵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종래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구소련과 미국에 대하여 모종의

⁵ 이것은 ‘연안접속수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어업규제에 대한 점정조치에 관한 소련최고회의 간부령’에 의한 것으로서, 동 법령에 대신하여 1984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77년에 선포한 '200해리 어업수역'이다. 이와 같은 200해리 어업수역은 자원이용과 관련한 대소·대미교섭에서 동등성을 얻고자 함이었는데, 12해리 영해법과 마찬가지로 1977년 7월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 조치법(일명 어업수역법)'을 신속하게 국회 심의에 통과시킴으로써 200해리 어업수역시대를 맞게 되었다.

일본의 200해리 어업수역법의 특징은 동중국해, 서해, 동해와 같이 우리 나라와 중국에 면한 해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들 해역에 있어서는 외국인 어업규제조치의 적용을 유보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우리 나라와 중국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우리 나라와 중국과는 별도의 어업협정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200해리 어업수역법의 핵심은 외국에 대한 어획할당방식을 잉여원칙에 둔다거나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어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두었다. 즉, 국내어업에 관하여 과학적·정량적인 자원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어업에의 대응도 극히 정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2.2.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과정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포괄적인 경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측면에서 영해에 버금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안국들이 이미 1970년대 이전에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미국과 구소련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이후 많은 나라들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일본도 1977년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이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

하였다.

특히, 200해리 어업수역에서 제외되었던 한국과 중국 해역에 있어서 한일간 및 중일간 '어업환경은 1980년대 들어 크게 반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종래 한국과 중국에 의해 일본측 200해리 수역내에서 어업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일본도 한국과 중국근해에서 많은 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간 및 중일간 기존의 어업협정이 애당초 일본에 유리하게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 한국과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업자들의 항의가 크게 대두되었다. 즉, 한국 트롤어업의 북해도 조업을 계기로 북해도 어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었으며, 서일본지역에서도 한국과 중국 어선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일본의 기득권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결과 1983년 5월 일본의 全漁聯은 한국과 중국측에 대해서도 200해리 어업수역을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이 200해리 어업수역을 한국측에 선포하게 되면 그에 대응해서 한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가 예상되고, 그럴 경우 서해 및 제주도수역에 출어하고 있던 서일본어업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해리 어업수역 전면선포는 불가하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어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1990년대 이후 한국과의 조업자율규제와 중국과의 중일 어업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의 어업구조 변화는 일본의 연근해어업을 지속적으로 쇠퇴시켜 한국과 중국에 의한 상대적 어장 상실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종래 일본의 어업세력이 크게 우세를 보여왔던 남해,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어업세력은 지속적으로 신장을 거듭하여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서일본수역에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었다<표 3-4>. 이는 결국 서일본지역의 어업자들에게도 200해리 어업수역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표 3-4 서일본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상황

연 도	육안확인 척수		황천시 중국어선의 일본항내 긴급피항 건수
	저인망어선(조)	선망어선(통)	
1987	1,382	262	1,443
1988	2,471	243	1,413
1989	2,536	159	1,246
1990	4,154	398	2,037
1991	1,679	295	1,265
1992	1,502	303	1,830

자료: 수협중앙회, 「주변국 수산업 현황」, 1995.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93년 11월로 UN 국제해양법이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써 효력을 나타내게 되자 200해리 어업수역을 대신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는 1995년에 접어들면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제해양법 및 수산정책과 관련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논의가 빈번해진 것이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 한일 조업자율규제의 완료시점이 1996년 12월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한일 조업자율규제시대의 이후 관계로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선포시점은 협상기간을 고려할 때 1996년 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2.3. 최근의 동향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동향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가을 이후였다. 그 동안 일본 국내의 어업상황으로 인해 선포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995년 가을 이후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논의는 드디어 1996년 2월 20일 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방침발표가 있었으며, 이 발표는 국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리 나라의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이다. 더구나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에 앞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 감정을 크게 자극하게 되었다.

2월 20일의 공식발표 이후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3월 26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어업주권법, TAC법 등 8개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빠른 진행은 양국 어업자들을 매우 긴장시켰다. 이에 따라 한일간에 유지되어 오던 어업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 양국 어업행정담당자들은 한일 어업회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1996년 5월 9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어업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일본측은 조속한 시일내 새로운 어업질서를 형성하여 EEZ체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회담으로부터 1년내, 즉 1997년 6월 이내에 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그 1년 후에는 기존의 한일간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200해리 경제수역의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일본내 여론을 강조한 것이었다.

아울러 국제해양법규정에 따라 현행 기국주의체제를 연안국주의체제로 전환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하에서도 상호 입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어종별, 수역별 어획할당에 의한 자원관리방식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어업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일 어업회담은 한일간의 입장 표명에 그친 채 별다른 진전없이 5월 10일 이틀간에 걸친 일정을 끝냈다.

이와 같은 과정하에서 일본 국회는 동년 7월 20일 200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시행시기는 1997년 1월 1일로 하였다.

3.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된 중국의 동향 검토

3.1. 200해리 경제수역 동향

한일간의 동향에 따라 중국도 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즉, 1996년 5월 15일 국제해양법을 비준함과 동시에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방침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200해리의 기초가 되는 영해기선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1992년 2월 25일에 규정한 “중국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영해 직선기선의 좌표를 새로이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은 한일간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는 국제해양법에 의한 영해기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국에 크게 유리한 영해기선 좌표를 새로이 선포한 것은 종래 되풀이하여 주장해 오던 서해에 있어서의 대륙연장설을 부정하고 국제해양법에 의한 경계획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2. 한중 어업협정 동향

한국과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민간에 의한 어업교류가 시작되었지만 국가간 어업협상은 없었다. 그러다가 1993년 양국의 국교가 수립됨을 시발로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어업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3년 10월 첫번째 어업회담이 개최된 이후 1996년 5월까지 5차례의 어업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동안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중국은 서해의 대륙연장설을 주장하는 등 협상내용의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협정수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 우리 나라는 영해, 자원관리수역, 공동관리수역으로 구획할 것

을 주장한데 대해 중국측은 영해와 공동관리수역으로만 구획하자고 주장하는 등 범위 설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이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이후 '일본과 한국에 의해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중간의 어업회담도 크게 진전되었다.

즉, 1996년 5월 3일과 4일에 개최된 제5차 어업회담에서는 한중 어업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서해에 있어서 어족자원보호의 긴요성에 따라 양측은 자원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공동자원 조사방안, 어업자원관리센타 설치문제, 수산자원증식센타 설치문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업 문제에 있어서 중국측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합의시까지의 잠정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영해 외측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하에서도 상호 입어를 허용할 것을 시사한데 비해 우리 나라는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를 전제로 한 조기 협정 체결과 협정 체결시까지 양국 중간선을 경계로 관할권을 행사하자고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또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측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데 비해 중국측은 경제수역 경계선 합의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 4 장

가상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각국 어업실태 및 이해득실 분석

1. 200해리 수역내 각국 어획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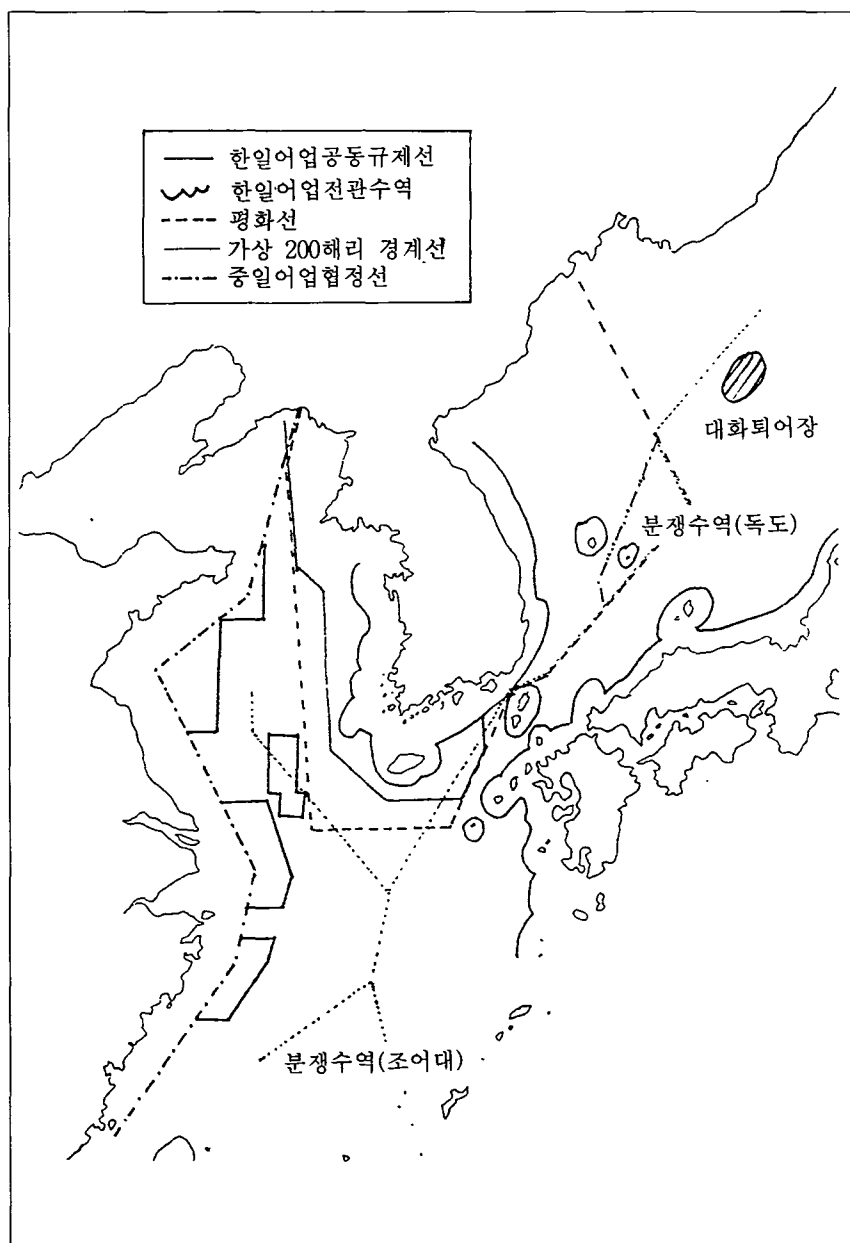
1.1. 어장 개요 및 총량실태

1.1.1. 우리 나라 주변의 각종 어업 관련 경계선

우리 나라 주변의 각종 어업관련 경계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주변 국가들이 어업이나 해양관할과 관련하여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경계선들은 크게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한일간의 각종 규제선, 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간의 각종 규제선 그리고 해방 이후 군정기에서 한일 어업협정기까지 혼란했던 시기의 각종 경계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군정기에서 한일 어업협정기까지의 각종 경계선에는 맥아더

그림 4-1 우리 나라 주변의 각종 어업 관련 경계선



라인, 클라크라인, 평화선(일명 이승만라인) 등이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어업협정선과 달리 해양경계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국 혹은 점령국의 지위에 있던 미군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각종 경계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장의 지도에 표기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각종 경계선을 최근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선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면 그림 <4-1>과 같다.

아울러 이 그림에는 가상적인 200해리 경계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해양법상의 가장 온건한 해석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예상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일간 독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수역과 중일간 釣魚臺(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수역에서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나 국제해양법의 가장 온건한 해석에 의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가상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00해리 가상 경계선은 평화선과 가장 유사한 모양을 갖는 것이 흥미롭다.

1.1.2.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하의 각국 어획 실태

가상 중간선으로 상정한 200해리 경제수역하에서 한중일 3국의 어획실

표 4-1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하의 각국 어획총량 실태 추정, 1994

단위: 천M/T

구 분	한국측 수역	중국측 수역	일본측수역	공 해*	합 계
한 국	1,177	171	230	13	1,591
중 국	300	3,660	-	-	3,960
일 본	145	60	2,146	-	2,351
합 계	1,622	3,891	2,376	13	7,902

* 북해도 해역에서의 조업중 공해상으로 판정되는 해역에서의 조업.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태는 <표 4-1>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상수역에서의 전체 어획량은 7,902천M/T인데, 이중 중국이 3,960천M/T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으로서 2,351천M/T, 한국이 1,591천M/T이 되고 있다. 가상 200해리 경제수역별로는 한국측 수역이 1,622천M/T, 중국측 수역이 3,891천M/T, 일본측 수역이 2,376천M/T이 되고 있으며,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외에 북해도의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의 어획량 13천M/T이 이와는 별도로 어획되고 있다.

표 4-2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하의 국별 업종별 어획실태, 1994

단위: 천M/T

구 분		한국측수역	중국측수역	일본측수역	공 해*	합 계
한국	대형저인망 ¹⁾	130.1	66.0	12.0	-	208.1
	근해안강망	115.4	40.0	-	-	155.4
	대형 선망	192.2	7.0	75.0	-	274.2
	근해채낚기	58.2	0.6	33.0	-	91.8
	중형저인망	31.4	9.0	7.0	-	47.4
	근해 통발	2.4	39.4	2.3	-	44.1
	근해유자망	34.6	5.6	2.0	-	42.2
	근해 연승	9.7	3.3	-	-	13.0
	기 타	602.7	-	2.0	-	604.7
	소 계	1,176.7	170.9	133.3	-	1,480.9
	북양 트롤	-	-	65.0	-	65.0
	원 쾡치붕수망	-	-	30.0	2.0	32.0
	양 기 타	-	-	2.0	11.0	13.0
	소 계	-	-	97.0	13.0	110.0
합 계		1,176.7	170.9	230.3	13.0	1,590.9
중국	미 상	300.0	3,660.0	-	-	3,960.0
일본	이서저인망	6.0	35.0	11.0	-	52.0
	총합저인망 ²⁾	3.0	-	40.0	-	43.0
	선 망	134.0	25.0	772.0	-	931.0
	기 타	2.0	-	1,323.0	-	1,325.0
	소 계	145.0	60.0	2,146.0	-	2,351.0
합 계		1,621.7	3,890.9	2,376.3	13.0	7,901.9

1) 기선저인망에는 트롤 포함.

2) 총합저인망에는 쌍끌이, 외끌이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이와 같은 어획실태를 업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4-2>와 같은데, 한국은 중국측 수역에서 대형저인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등의 업종이, 일본측 수역에서는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등의 업종이 많이 조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한국측 수역에서 선망이, 중국측 수역에서는 이서저인망과 선망이 많이 조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구체적인 업종별 자료가 입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 외측에서 어획되는 물량은 총 401.2천M/T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측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170.9천M/T, 일본측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230.0천M/T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다시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 동해 그리고 남해안에서의 어획량 133.3천M/T과 200해리 체제로 될 경우 전부 일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지는 북해도에서의 원양어획량 97천M/T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북해도 주변에서는 공해상에서 별도로 13천M/T이 어획되고 있다.

북해도 주변에서의 원양어업은 북양트롤과 쾡치봉수망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외 오징어채낚기어업이 다소 조업하고 있다.

1.2. 한국의 어업실태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의 어업실태를 보다 구체적인 어장별로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이는 북해도 주변어업을 제외한 한반도 중심의 어업상태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해역의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 밖의 어획량은 <표 4-2>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304.2천M/T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측 수역에서 가장 많은 어획을 보이고 있는 수역은 대마도 북부수역으로서 85천M/T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대마도 남부해역이며, 독도근해는 15천M/T 가량이 되고 있다. 대화퇴해역은 10천M/T 가

표 4-3 업종별 200해리 외측 어장별 어획량실태 추정

단위: M/T

업 종	일본측 수역					중국측 수역			200해리 외측 전체
	대화퇴	독도 근해	대마도 북부	대마도 남부	소계	황해	동중 국해	소계	
대 형 트 롤	-	133	6,795	1,072	8,000	-	6,000	6,000	14,000
대형기저쌍끌이	-	-	-	-	-	2,817	57,183	60,000	60,000
대형기저외끌이	-	-	725	3,275	4,000	-	-	-	4,000
대 형 선 망	-	1,220	61,173	12,609	75,000	5,905	1,095	7,000	82,000
근 해 안 강 망	-	-	-	-	-	204	39,796	40,000	40,000
근 해 채 낚 기	6,926	10,353	15,593	128	33,000	323	277	600	33,600
근 해 유 자 망	800	800	200	200	2,000	-	5,600	5,600	7,600
서 남 구 기 저	-	-	-	7,000	7,000	9,000	-	9,000	16,000
동 해 구 트 롤	-	-	-	-	-	-	-	-	-
동해구기저외끌이	-	-	-	-	-	-	-	-	-
근 해 통 발	1,150	1,150	-	-	2,300	3,940	35,460	39,400	41,700
근 해 연 승	-	-	-	-	-	330	2,970	3,300	3,300
기 타	800	1,000	100	100	2,000	-	-	-	2,000
합 계	9,676 (3.2)	14,656 (4.8)	84,586 (27.8)	24,384 (8.0)	133,300 (43.8)	22,519 (7.4)	148,381 (48.8)	170,900 (56.2)	304,200 (100.0)

자료: 수산진흥원 자료를 재구성.

량으로서 근해채낚기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이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독도 근해에서는 근해채낚기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이 많이 조업하고 있다. 대마도북부해역에서는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 그리고 대형트롤어업이 많이 조업하고 있으며, 대마도 남부해역에서는 대형선망어업과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이 많이 조업하고 있다.

한편 중국측 수역에서는 황해보다 동중국해에서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황해에서의 어획량이 23천M/T인데 비해 동중국해의 경우 148천M/T이나 된다. 황해에서의 조업형태는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과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에 의해 주로 어획되고 있다.

표 4-4 업종별 200해리 외측 어장별 어획금액실태 추정

단위: 백만원

업종	일본측 수역					중국측 수역			200해리 외측 전체
	대화퇴	독도 근해	대마도 북부	대마도 남부	소계	황해	동중국해	소계	
대형트롤	-	218	11,137	1,757	13,112	-	9,834	9,834	22,946
대형기저쌍끌이	-	-	-	-	-	5,569	113,051	118,620	118,620
대형기저외끌이	-	-	1,906	8,610	10,516	-	-	-	10,516
대형선망	-	769	38,539	7,944	47,252	3,720	690	4,410	51,662
근해안강망	-	-	-	-	-	354	68,966	69,320	69,320
근해채낚기	13,152	19,660	29,611	243	62,666	613	526	1,139	63,805
근해유자망	1,345	1,345	336	336	3,362	-	9,414	9,414	12,776
서남구기저	-	-	-	20,104	20,104	25,848	-	25,848	45,952
동해구트롤	-	-	-	-	-	-	-	-	-
동해구기저외끌이	-	-	-	-	-	-	-	-	-
근해통발	1,293	1,293	-	-	2,586	4,429	39,857	44,286	46,872
근해연승	-	-	-	-	-	1,473	13,258	14,731	14,731
기타	1,029	1,286	129	129	2,573	-	-	-	2,573
합계	16,819 (3.7)	24,571 (5.3)	81,658 (17.8)	39,123 (8.5)	162,171 (35.3)	42,006 (9.1)	255,596 (55.6)	297,602 (64.7)	459,773 (100.0)

자료: 수산진흥원 자료를 재구성.

또 <표 4-4>에는 동 어장에서 어획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동 어장에서 어획되는 총어획금액은 4,598억원이 되고 있으며, 이중 일본측 수역에서 1,622억원, 중국측 수역에서 2,976억원이 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이 1,18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근해안강망어업이 693억원, 근해채낚기어업이 638억원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를 어장별로 보면 대화퇴와 독도 근해에서는 근해채낚기어업이, 대마도 북부해역에서는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이, 대마도 남부해역에서는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이 어획금액이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또 서해에서도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이, 동중국해에서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 4-3>과 <표 4-4>를 통해 볼 때 200해리 외측 어장중에서 우리 나라가 많은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획량 측면에서는 동중국해와

대마도 부근해역이지만 어획금액 측면에서는 동중국해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근해채낚기어업의 어획금액이 많은 독도 근해도 비교적 높은 어획금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일본 및 중국

1.3.1. 일 본

우리 나라와 중국측 수역에서의 일본 어획량은 <표 4-2>에서 본 바와 같이 205천M/T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한국측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45천M/T, 중국측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60천M/T이 되었다. 이를 수역 별로 구분해 보고, 아울러 어획금액을 추정해 보면 <표 4-5>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0해리 경제수역 중 우리 나라 내측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어업종류는 대중형선망어업과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 및 일부 총합저인망어업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측 수역에서는 선망과 원양어업에 해당하는 이서저인망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서저인망어업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해도 우리 나라 서해에서 대단히 많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자원감소로 점차 조업이 쇠퇴하여 현재는 동중국근해에

표 4-5 일본의 우리 나라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실태 추정, 1994

구 분	어 획 량(M/T)			어획 단가 ¹⁾ (円/KG)	어획 금액 (백만円)	주요 어종
	독도 수역	기 타	합 계			
대형저인망 ²⁾	-	6,000	6,000	530	3,180	오징어, 보구치, 갈치, 참조기, 넙치, 가자미류
대중형선망	32,440	101,560	134,000	312	41,808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기 타 ³⁾	3,750	1,250	5,000	135	675	살오징어, 빨간오징어, 잡오징어, 명태 등
합 계	36,190	108,810	145,000		45,693	

1) 업종 평균단가.

2) 이서저인망어업 및 총합저인망어업.

3)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 및 총합저인망.

서만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획하는 물량 145천M/T중 독도근해에서 어획하는 물량은 36천M/T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109천M/T은 제주도근해 등에서 어획하는 물량이 된다. 업종별로는 대중형선망이 134천M/T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획단가면에서는 대형저인망어업의 어획단가가 Kg당 530円으로서 가장 높은데, 이는 오징어, 보구치, 갈치, 참조기, 넙치, 가자미류 등 비교적 고급어를 많이 어획하기 때문이다.

1.3.2. 중 국

중국의 측면에서 본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 외측에서의 어획량은 앞의 <표 4-2>에서 본 바와 같이 300천M/T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두 한국측 수역에서의 조업에 의한 것이며, 일본측 수역에서는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일본수역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중국의 저인망어선이 수천척에 이르고 선망통수도 300여 통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측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어선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에 의한 어획량 또한 매우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각국의 상호 어획득실 비교(가상선 기준)

2.1. 어획량 측면

위의 어획실태를 토대로 한중일간 상호 어획득실 비교를 해 보면 <표 4-6>과 같다. 이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대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획량이

표 4-6 각국별 타국 200해리내 어획에 대한 상호 어획 득실 비교

단위: 천톤

구 분	對한국(한국수역)	對중국(중국수역)	對일본(일본수역)	총 득 실
한 국		129 (300-171)	△85(145-230)	44
중 국	△ 129(171-300)		60(60 - 0)	△ 69
일 본	85(230-145)	△ 60 (0 - 60)		25

마이너스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대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44천톤의 플러스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어획량이 마이너스효과를 보이는 대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한국에서의 어획량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는 69천톤의 마이너스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25천톤의 플러스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가상선대로 200해리 경제수역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플러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득실은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호 입어나 어획할당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업협상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0이 되는 선에서 협상균형점이 이루어 질 것이다.

2.2. 어획금액 및 부가가치 측면

각국별 상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의 평균 어획금액과 부가가치액을 추정해 보면 <표 4-7>과 같다. 이것은 우선 어획금액의 경우 <표 4-2>에 나타난 어획량에 자국의 어가를 고려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상대수역에서 6,209억원,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상대수역 내에서 5,088억원,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상대수역내에서 4,984억원을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획금액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4-4>에서의 어획금액에다가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어획금액까지 합쳤기 때문인데, 북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북양트롤, 쫄치붕수망 등의 어획금액을 제외한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것이 된다.

한편 부가가치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한국과 중국이 각각 3,355억원과 2,814억원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1,560억원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 한국의 부가가치율이 보통 50~60%인데 비해 일본의 경

표 4-7 각국별 상대 200해리 내에서의 평균 생산금액 및 부가가치액 추정

구 분	상대수역내에서의 생산금액 (A) (백만원)				부가 가치 율(B) (%)	상대수역내에서의 부가가치액 (A×B) (백만원)			
	한국측	중국측	일본측	합계		한국측	중국측	일본측	합계
한 국	기선저인망	128,454	23,628	152,082	53.2		68,338	12,570	80,908
	근해안강망	69,320	-	69,320	53.4		37,017	-	37,017
	대형 선망	4,410	47,252	51,662	36.2		1,596	17,105	18,701
	근해채낚기	1,139	62,666	63,805	68.4		779	42,864	43,643
	근해 통발	44,286	2,586	46,872	50.7		22,453	1,311	23,764
	북양 트롤	-	110,240	110,240	54.3		-	59,860	59,860
	쫄치붕수망	-	50,880	50,880	56.4		-	28,696	28,696
	기 타	49,993	26,039	76,032	56.4		28,196	14,686	40,725
소 계		297,602	323,291	620,893			158,379	177,092	335,471
중 국	508,800		-	508,800	55.3	281,366		-	281,366
일 본	이서저인망	18,522	108,045	126,567	37.4	6,927	40,409		47,336
	총합저인망	4,692	-	4,692	43.6	2,046	-		2,046
	선 망	305,198	56,975	362,173	28.7	87,592	16,352		103,944
	오징어채낚기	4,928	-	4,928	54.1	2,666	-		2,666
	소 계	333,340	165,020	498,360		99,231	56,761		155,992

우 오징어채낚기어업만 54.1%이고, 나머지는 20~4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중일간 어업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 측면을 고려한다면 200해리 경제수역을 천포한다고 하여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3. 조업어선 척수 측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한중일간의 어업문제를 논할 경우 어획량이나 어획금액과 더불어 현재 조업하고 있는 어선수가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된다. 이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호 입어문제가 한중일 모두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상호 입어가 협상의 의제로 될 경우 어획량보다 실제로는 조업척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수역에서의 조업어선 척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왜냐하면 어선별로 조업허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군을 쫓아 이동하는 어선수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일정 기간, 예컨대 1년간의 어선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간 당해 수역에서의 어선세력을 가늠해 본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서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상대수역에서의 조업어선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급된 어획자료를 토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상대수역에서의 어획자료를 각국별 어선척당 평균어획량으로 나누어 어선척수를 추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추정된 어선척수의 개념은 상대수역에서 연간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척수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치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다양한 어업이 출어하여 일본측

수역에서 1,482척, 중국측 수역에서 1,418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측 200해리 수역내에서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연승어업 등이, 중국측 수역내에서는 근해안강망,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유자망어업 등의 어업이 많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일본 원양어업에 해당하는 이서저인망어업과 연근해어업인 총합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등이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 수역내에서 총 301척, 중국 200해리 경제수역내에서 총 184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우리 나라 수역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이 162척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수역에서는 이서저인망어업이 154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8 각국별 상대 200해리 내에서의 평균 조업척수 추정

구 분		한국 수역	중국 수역	일본 수역	총어선수
한국	대 형 트 롤		40 (40.4)	40 (40.4)	99
	대형기저쌍끌이		200 (52.1)	- (-)	384
	대형기저외끌이		- (-)	55 (69.6)	79
	대 형 선 망		35 (10.7)	280 (85.6)	327
	근 해 안 강 망		400 (49.6)	- (-)	807
	근 해 채 낚 기		100 (12.1)	320 (36.3)	827
	근 해 유 자 망		194 (19.3)	98 (9.8)	1,003
	서 남 구 기 저		62 (77.5)	18 (22.5)	80
	동 해 구 트 롤		- (-)	- (-)	12
	동해구기저외끌이		- (-)	- (-)	60
	근 해 통 발		217 (40.6)	86 (16.1)	535
	근 해 연 승 등		170 (14.9)	605 (52.9)	1,144
합 계		-	1,418 (26.5)	1,482 (27.7)	5,357
중 국		1,800 (...)		-	...
일본	이 서 저 인 망	26 (13.3)	154 (79.0)		195
	총 합 저 인 망	9 (1.5)	- (-)		612
	대 중 형 선 망	162 (58.3)	30 (10.8)		278
	기 타	104 (...)	- (-)		...
	합 계	383 (...)	659 (...)	-	...

주: ()는 총어선에 대한 비율.

중국의 경우는 업종별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어업종류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역으로는 우리 나라 200해리 수역내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00여척이 출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수역을 불문하고 모두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 장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1. 업종별 어업경영 실태 및 피해를

1.1. 경영실태

1994년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업경영상태는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수협에서 조사발표되는 어업경영조사보고의 통상적 경영실태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태가 다른 업종보다 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업종의 매출액어업이익률을 보면 7.0%와 -7.3%로서 비교적 낮거나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자본감안이익률의 경우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이나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근해안강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⁶.

⁶ 이는 최근에 발표된 1995년의 경영수지분석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여기서 자본감안이익률이란 당기순이익액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 이자액을 공제한 이익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서 자기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는 단순한 이익의 개념에서 벗어나 어업을 사업의 일종으로 보았을 때 어업자들이 어업을 지속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경제학적개념으로 본다면 장기적관점에서의 이익률(long-run profit rate)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표에서와 같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이나 대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업에 자본을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의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낫더라도(매출액어업이익률), 장기적으로는 투자메리트가 없다는 말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15%로 보았다.

표 5-1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단위: 천원, %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이익률	자본감안이익률
대형기저쌍끌이	1,058,793	984,325	74,468	7.0	- 3.3
대형기저외끌이	284,710	237,553	47,157	16.6	31.3
대 형 트 롤	1,050,761	850,067	200,694	19.1	21.8
대 형 선 망	3,571,715	3,831,026	- 259,311	- 7.3	- 22.3
근 해 안 강 망	376,449	329,812	46,637	12.4	9.8
근 해 채 낚 기	351,338	298,320	53,018	15.1	7.7
근 해 유 자 망	74,885	50,159	24,726	33.0	14.0
서 남 구 기 저	451,330	302,145	149,185	33.1	49.9
근 해 통 발	308,239	230,718	77,521	25.1	20.9
근 해 연 승	107,770	87,024	20,746	19.3	16.9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

있다. 즉,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과 대형선망어업의 매출액 이익률이 8.5%와 0.4%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본감안이익률을 통상적으로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매출액이익률과 별도로 사용한 또다른 이유로는 200해리 경제수역 논의에 있어서 경합되는 어장에 있어서 일본 및 중국과의 적절한 경영상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단순한 어업이익률의 수평적비교는 각국이 기업 혹은 어업경영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되어 타당한 비교가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업이익액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각국별 정상이자분을 공제한 것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2. 어업피해율

업종별 피해율은 4장에서 살펴 본 200해리 경제수역의 외측에서 조업하는 어획량이 당해 업종의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200해리 외측에서 조업한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협상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만큼은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상 피해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200해리 경

표 5-2 한국 어업의 어업피해율(가상선 기준)

단위: M/T, %

업 종	평균어획량(A)*	피해어획량(B)*			피해율 (B/A)		
		대일본	대중국	합 계	대일본	대중국	합계
대형기저쌍끌이	111,362	-	60,000	60,000	-	53.9	53.9
대형기저외끌이	12,661	4,000	-	4,000	31.6	-	31.6
대 형 트 롤	84,000	8,000	6,000	14,000	9.5	7.1	16.7
대 형 선 망	274,180	75,000	7,000	82,000	27.4	2.6	29.9
근 해 안 강 망	155,442	-	40,000	40,000	-	25.7	25.7
근 해 채 낚 기	91,828	33,000	33,600	66,600	35.9	36.6	72.5
근 해 유 자 망	42,171	2,000	5,600	7,600	4.7	13.3	18.0
서 남 구 기 저	35,757	7,000	9,000	16,000	19.6	25.2	44.7
근 해 통 발	44,124	2,300	39,400	41,700	5.2	89.3	94.5
근 해 연 송	12,991	-	3,300	3,300	-	25.4	25.4

* 1993~95년 3년 평균.

제수역 외측의 어획량은 1993년에서 1995년의 3개년간의 측정치이기 때문에 당해 업종의 전체 어획량도 1993년에서 1995년의 3개년 평균치에 의하였는데,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피해율의 정도는 <표 5-2>와 같다.

<표 5-2>에 의하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중 일본에 의해 어업피해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을 들 수 있으며,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통발어업 등은 중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연승어업은 일본에 의해,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은 중국에 의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2.1. 추정방법

이 장에서의 영향분석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상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당해 어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상정한다. 따라서 각 업종별로 <표 5-2>에서 추정한 피해율에 비례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때 어획성과인 어업수입은 당연히 피해율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나⁷, 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게 된다. 즉, 비용의 성격상 피해율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고정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그렇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영향분석의 방법은 업종별 비용항목에 대해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변동

⁷ 어획물 생산 하락에 따른 가격 변동도 문제의 단순화를 기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

비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비례하거나 적정비율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하였고, 고정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비용 구분은 <표 5-3>과 같은데, 변동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선원임금, 얼음대, 어상자, 판매수수료가 있고, 선내식료대, 복리후생비, 어선수리비 등은 고정비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선원임금은 1/2만 변동비로 고려하였고, 나머지는 고정비로 간주하였다. 이는 선원임금의 경우 대부분 고정급과 보험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으며, 고정급 지급비율이 업종별로 30~60%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 1/2을 변동비로, 나머지는 고정비로 간주하였다.

표 5-3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을 위한 변동비와 고정비 비목 구분

구분	비목	비고
변동비	선원임금, 얼음대, 어상자, 판매수수료	선원임금은 고정급과 보험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을 계상
고정비	선내식료, 복리후생비, 어선수리비, 어구비, 유류대, 이료대, 제재료비, 제시설비, 임차료, 사무비, 기타어업비, 감가상각비, 어업외비용	

2.2.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영향(시나리오 I)

이 연구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한 어업영향은 일본, 중국과의 각각의 관계 및 일본과 중국의 동시적 관계에 따라 I, II, III의 세 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그 방법은 <표 5-1>, <표 5-2>, <표 5-3>을 이용하였는데, 시나리오 I은 일본과의 관계를 상정한 것으로서 분석결과는 <표 5-4>와 같다.

이를 <표 5-1>의 현재의 어업경영상태와 비교해 보면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아 현재보다 경영상

태가 훨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즉,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매출액어업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자본감안이익률의 경우도 마이너스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대형선망의 경우 매출액어업 이익률과 자본감안이익률 모두 가장 높은 마이너스치를 보이고 있으나, <표 5-1>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어업상황 자체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5-1>과 <그림 5-2>에 의해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그림 5-1>은 각 업종별로 매출액어업이익률을 1994년 현재와 시나리오 I에 의한 것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5-2>

표 5-4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단위: 천원, %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대형기저쌍끌이	1,058,793	984,325	74,468	7.0	- 3.3
대형기저외끌이	194,761	215,678	- 20,917	-10.7	- 35.5
대 형 트 롤	950,689	826,828	123,861	13.0	7.7
대 형 선 망	2,594,698	3,504,242	- 909,544	-35.1	- 40.4
근 해 안 강 망	376,449	329,812	46,637	12.4	10.1
근 해 채 낚 기	225,079	264,953	- 39,874	-17.7	-32.0
근 해 유 자 망	71,334	49,335	21,998	30.8	10.8
서 남 구 기 저	362,975	285,632	77,343	21.3	18.7
근 해 통 발	292,172	228,446	63,725	21.8	14.5
근 해 연 승	107,770	87,024	20,746	19.3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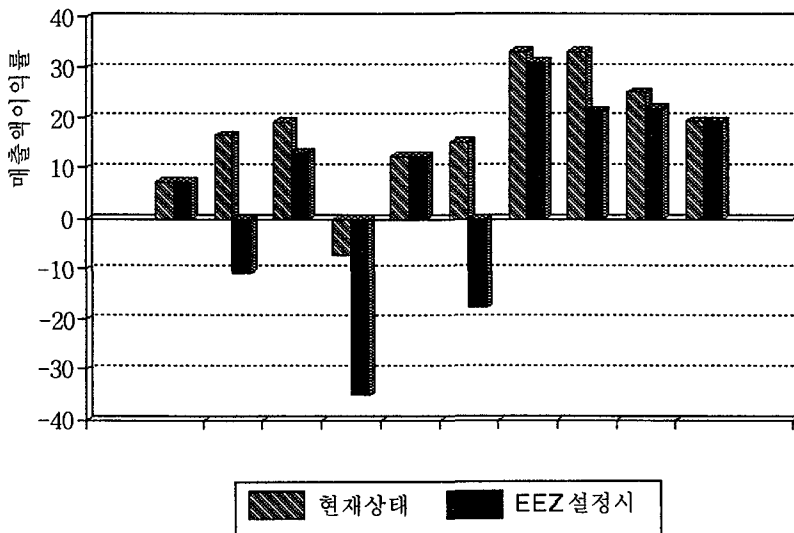
⁸ 이 분석에서 동해구트롤,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은 제외되었다. 이는 이들 업종도 근해어업에 속하기는 하나 주조업구역이 연안지역으로서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한 어업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는 자본감안이익률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각 그래프에 나타난 업종은 왼쪽부터 <표 5-4>에 나타난 업종과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다.

2.3.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영향(시나리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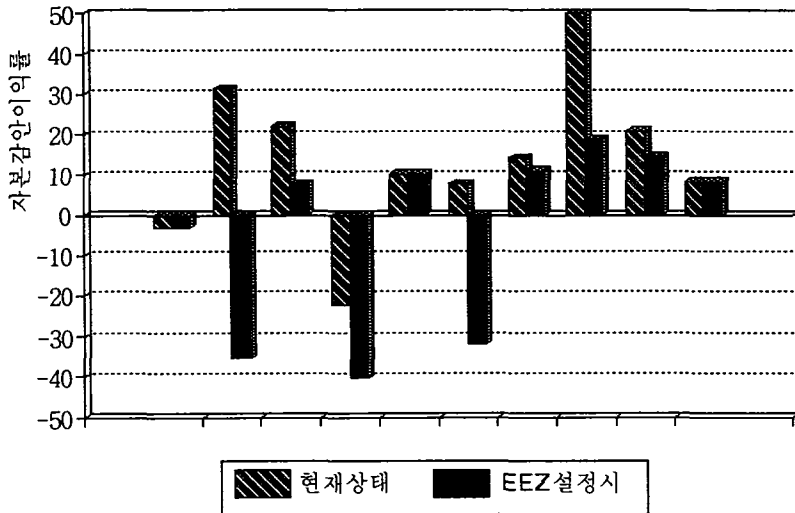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어업영향은 시나리오 II로 상정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분석결과는 <표 5-5>와 같다. 이를 <표 5-1>의 현재의 어업경영상태와 비교해 보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중국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연승어업의 경우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선저쌍끌이, 대형기선저외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선저,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나타냄.

그림 5-2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어업의 경우 매출액이익률이 -74.6%이고, 자본감안이익률도 -72.6%로서 중국에 의한 어업영향이 극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해통발어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익률이 무려 -481.2%에 이르고 자본감안이익률도 -88.6%에 이르게 되어 중국과 단순한 200해리 경제수역이 설정될 경우 어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등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과 근해유자망어업은 매출액이익률이 16~26%에 이르며,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의 경우 자본감안이익률도 31.5%나 된다.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익률이 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

이에 비해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등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과 근해유자망어업은 매출액이익률이 16~26%에 이르며,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의 경우 자본감안이익률도 31.5%나 된다.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익률이 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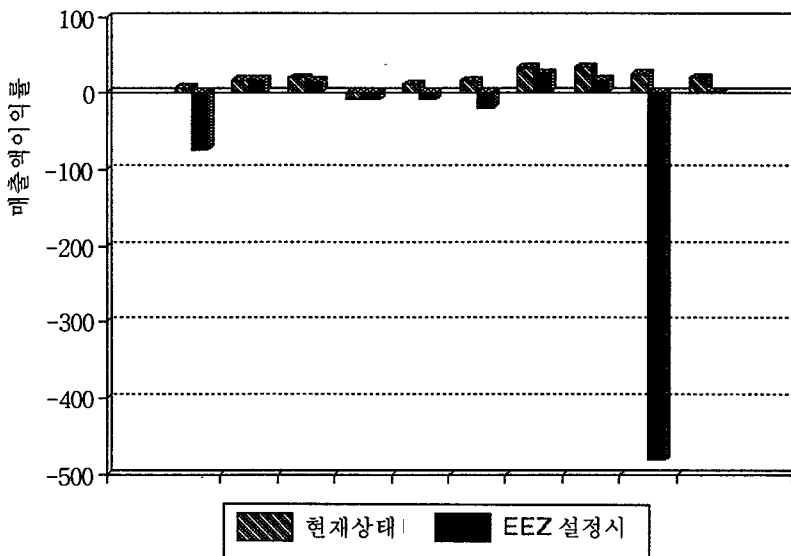
표 5-5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단위: 천원, %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대형기저쌍끌이	488,333	852,526	-364,194	- 74.6	-72.6
대형기저외끌이	284,710	237,373	47,337	16.6	31.5
대 형 트 롤	975,707	832,637	143,069	14.7	11.3
대 형 선 망	3,480,527	3,800,526	-319,999	- 9.2	-24.0
근 해 안 강 망	279,577	303,251	- 23,674	- 8.5	-27.7
근 해 채 낚 기	222,783	264,346	- 41,563	- 18.7	-32.8
근 해 유 자 망	64,941	47,853	17,088	26.3	5.1
서 남 구 기 저	337,731	280,914	56,816	16.8	9.7
근 해 통 발	33,001	191,798	-158,797	-481.2	-88.6
근 해 연 승	80,394	78,819	1,576	2.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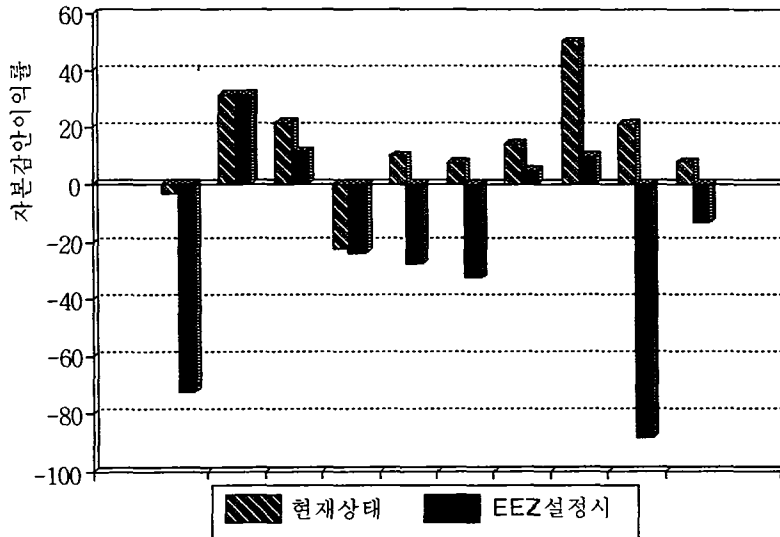
영상태와 비교해 볼 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저쌍끌이, 대형기저외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나타냄.

그림 5-4 중국과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저쌍끌이, 대형기저외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나타냄.

2.4. 일본과 중국의 관계 모두에 의한 영향(시나리오 III)

이상의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는 일본과 중국을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보고 시도한 영향분석결과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수역의 200해리 경제수역문제는 한중일 3국이 동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 모두에 의한 영향분석을 상정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이것을 시나리오 III으로 상정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나리오 III에 의한 어업영향분석결과는 <표 5-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현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 5-1>과 비교해 보면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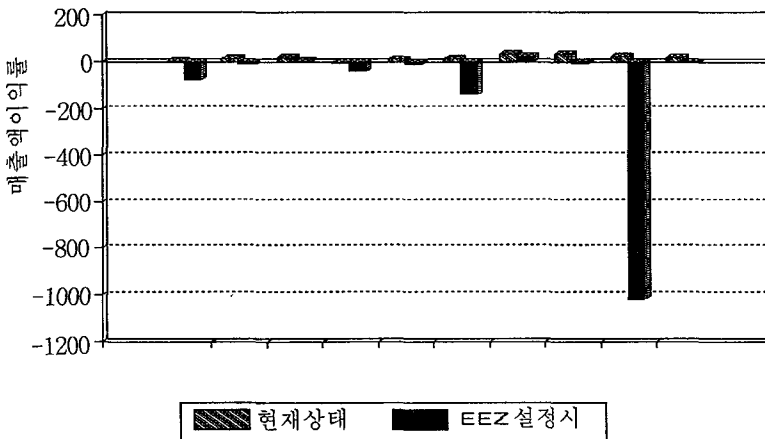
표 5-6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표

단위: 천원, %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대형기저쌍끌이	488,333	852,526	-364,194	- 74.6	-72.3
대형기저외끌이	194,761	215,678	- 20,917	- 10.7	-35.5
대 형 트 롤	875,634	809,398	66,236	7.6	- 2.8
대 형 선 망	2,503,509	3,473,742	-970,233	- 38.8	-42.1
근 해 안 강 망	279,577	303,251	- 23,674	- 8.5	-27.7
근 해 채 낚 기	96,523	230,978	-134,455	- 139.3	-72.5
근 해 유 자 망	61,386	47,029	14,360	23.4	1.9
서 남 구 기 저	249,376	264,402	- 15,026	- 6.0	-21.5
근 해 통 발	16,933	189,526	-172,593	-1,091.2	-95.0
근 해 연 승	80,394	78,819	1,576	2.0	-13.2

이에 비해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다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림 5-5>와 <그림 5-6>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5-5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저쌍끌이, 대형기저외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나타냄.

그림 5-6 일본과 중국 모두의 관계에 의한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대형기저쌍끌이, 대형기저외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을 나타냄.

3. 시나리오 I 에 의한 일본의 업종별 어업영향 분석

한일간 혹은 한중간의 관계에 의한 우리 나라 어업의 업종별 영향분석을 해 보았다. 여기서는 한일간 혹은 한중간의 관계에 의한 일본의 업종별 어업영향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의 결과는 향후 한일간의 어업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1. 업종별 어업경영 실태

일본의 업종별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나라와 어획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어업경영자료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일본과 중국에 의해 어업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 국내전체의 경영자료보다는 우리 나라와 어획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자료를 선택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동중국해에서의 경영상태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나라 및 중국과 어획경합을 벌이고 있는 업종을 선정한 후 각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경영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우리 나라와 어획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이서저인망어업, 총합저인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을 들 수 있다. 이중 이서저인망어업은 일본에서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총합저인망어업은 우리 나라의 근해어업에 해당한다.

한편 이서저인망어업은 과거 서해에서도 조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동중국해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중국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합저인망은 외끌이어업과 쌍끌이어업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우리 나라 동해를 주된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일본해구와 동중국해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대형선망어업은 중형선망의 경우 일본해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선망어

표 5-7 경제수역과 관련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단위: 천엔, %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이서 저인망 (동중국해)	326,380	383,953	- 57,573	- 17.6	- 19.7
총합 저인망 (일본해구)	115,495	106,941	8,554	7.4	2.8
총합 저인망 (동중국해)	249,882	282,728	- 32,846	- 13.1	- 15.6
중 형 선 망 (일본해구)	203,186	228,699	- 25,513	- 12.6	- 17.8
대 형 선 망 (동중국해)	1,027,227	1,141,900	-114,673	- 11.2	- 12.0
오징어채낚기(일본해구)	137,253	118,906	18,347	13.4	15.9

자료: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1996 및 수산청 자료에서 작성.

업은 동중국해를 기준으로 하였다.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일본서구, 북구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역시 일본해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일본의 어업경영실태는 <표 5-7>과 같다. 이에 의하면 이서저인망어업, 동중국해에서의 총합저인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의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이익률뿐만 아니라 자본감안이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3.2. 일본 어업의 피해율

한일간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에 의한 일본측 어업피해율은 <표 5-8>과 같다. 이에 의하면 200해리 가상선에 의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되는 업종으로는 대형선망어업으로서 피해율은 31.4%에 이르게 된다. 즉, 1994년 현재의 어획량 310천M/T중 97천M/T을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율은 31.4%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는 중형선망이 14%, 이서저인망이 13.2%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표 5-8 일본 어업의 어업피해율(가상선 기준)

업 종	어획량(A)	피해어획량(B)	단위: M/T, %
			피해율 (B/A)
이서 저인망 (동중국해)	45,420	6,000	13.2
총합 저인망 (일본해구)	31,021	3,000	9.7
총합 저인망 (동중국해)	-	-	-
중 형 선 망 (일본해구)	261,384	36,545	14.0
대 형 선 망 (동중국해)	310,431	97,455	31.4
오징어채낚기(일본해구)	37,938	2,000	5.3

3.3. 업종별 어업 영향 분석

200해리 경제수역 가상선에 의한 일본 업종별 어업영향분석의 방법은 앞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였다. 다만 자본감안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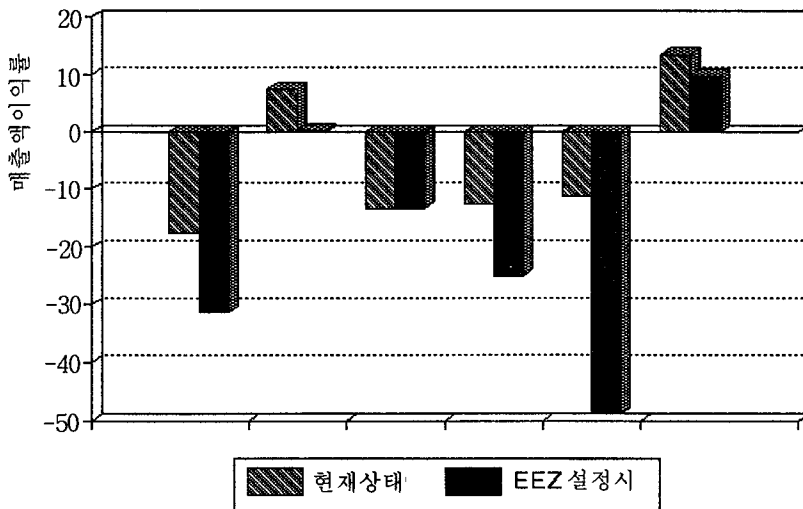
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이자율은 우리 나라와 달리 5%를 적용하였다. 이는 일본의 낮은 은행이자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상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상대비교의 가능성에 자본감안이익률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9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시 일본 업종별 어업영향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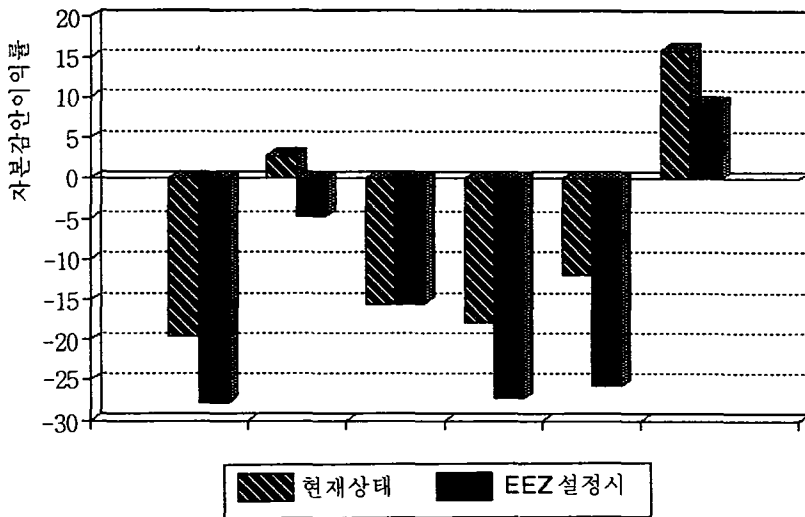
구 분	어업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이서 저인망 (동중국해)	283,265	372,039	- 88,774	-31.3	-27.7
충합 저인망 (일본해구)	104,326	104,100	226	0.2	- 4.8
충합 저인망 (동중국해)	249,882	282,728	- 32,846	-13.1	-15.6
중 형 선 망 (일본해구)	176,539	220,738	- 44,198	-25.0	-27.2
대 형 선 망 (동중국해)	697,247	1,037,750	-340,503	-48.8	-25.8
오징어채낚기(일본해구)	130,017	117,417	12,600	9.7	- 9.3

그림 5-7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일본 업종별 매출액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이서저인망, 충합저인망(일본해구), 충합저인망(동중국해), 중형선망(일본해구), 대형선망(동중국해), 오징어채낚기를 나타냄.

그림 5-8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일본 업종별 자본감안이익률 변화



주: 왼쪽부터 이서저인망, 총합저인망(일본해구), 총합저인망(동중국해), 중형선망(일본해구), 대형선망(동중국해), 오징어채낚기를 나타냄.

그 분석결과는 <표 5-9>와 같은데, 이를 현재의 어업상황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5-7>과 <그림 5-8>과 같다. 이 그림을 통해 볼 때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해 일본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는 이서저인망어업, 일본해구의 총합어업, 중대형선망어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대형선망어업의 경우는 매출액어업이익률이 현재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해구의 총합저인망어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중국해의 총합저인망은 현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지만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징어채낚기어업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우리 나라의 어업협상 추진 방향

1.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중일간 쟁점사항

1.1. 국제해양법에 대한 입장

현재 한중일간의 해양정책은 기본적으로 3개국 모두 국제해양법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과거 한중간 어업협상이나 국제무대에서 간간이 독자적인 주장을 펼쳐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했으나⁹, 1996년 5월 15일 해양법을 비준함과 동시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⁹ 서해에서의 대륙연장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서해의 해저에는 황하에서 흘러나온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데, 대륙붕주권설에 의해 토사가 퇴적된 부분의 해양관할권은 자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한다면 서해의 3/4 가량이 중국에 귀속되고 우리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바다는 연안 정도나 되는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UN해양법이 체결되므로 대륙붕주권설에 근거한 이 논리는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수역 선포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한중일간 기본적으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2. 200해리 경제수역의 경계선과 관련된 쟁점사항

한국, 일본 및 중국에 있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과 관련된 쟁점지역을 크게 구분해 보면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의 세 곳을 들 수 있다. 이중 동해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문제로, 동중국해는 釣魚臺 문제로 매우 복잡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동해의 쟁점지역이 되고 있는 독도수역에 있어 한국의 입장은 울릉도

표 6-1 한중일간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과 관련된 쟁점사항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기본 입장	○ 기선으로부터 중간선	○ 기선으로부터 중간선	○ 기선으로부터 중간선과 대륙연장설을 주장
쟁점 사항	<동해> ○ 울릉도를 기선으로 한 중간선이 기본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독도를 기선으로 함. (울릉도기선은 UN해양법에 근거) <서해> ○ 중간선을 고수	<동해> ○ 독도를 기선으로 한 중간선 (UN해양법에 배치) <동중국해> ○ 釣魚臺의 영유권분쟁 (기선문제)	<서해> ○ 대륙연장설을 근거로 하는 일면, 연안기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등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음. <동중국해> ○ 釣魚臺의 영유권분쟁 (기선문제)
진척 사항	<한일간> ○ 어업부분에 있어서 중간선 채택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독도영유권은 어업외적인 문제 등과도 연관되어 난항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어업회담과 경계선문제는 분리하여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음. <한중간> ○ 중간선 입장 주장	<한일간> ○ 좌동 <중일간> ○ 조어대를 중심으로한 경계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중일간> ○ 기존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려하나, 조어대 문제로 난항을 보이고 있음. <한중간> ○ EEZ 경계선 문제에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조속한 체결을 꺼리고 있음.

를 기선으로 하고, 일본은 오키섬을 기선으로 한 중간선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은 울릉도를, 일본은 독도를 기선으로 하여 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에는 다분히 무리한 점이 있다. 독도의 영유권과 관계없이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해양법의 통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서는 주민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유인도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독도에는 소수의 우리 나라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해기선으로서 포기하였는데, 그러한 독도를 일본측이 자국의 영해기선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협상전략상 상황에 따라서는 독도를 영해기선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해양법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국의 합의선을 가장 우선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일간에는 중간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독도 영유권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독도 영유권과 200해리와 관련된 어업협상은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를 실행중에 있다.

서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간 공히 중간선 입장을 지니고 있으나 대륙연장설의 시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즉, 1996년 5월 15일 발표한 영해 직선기선 좌표가 국제해양법의 합리적 규정을 훨씬 벗어난 선에서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을 여전히 엿볼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동해에서와 같이 釣魚臺(센가쿠열도)에 대한 영유권문

제가 중국과 일본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역시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문제에 영향을 미쳐 중국과 일본의 협상진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중일 어업협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조어대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

1.3. 어업협상의 우선순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문제가 수산정책의 큰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1996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의해 200해리 문제가 제기될 것은 그 전부터 알았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1996년 초였던 것이다. 이 결과 한일간 어업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왜냐하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독도 영유권문제와 맞물려 제기되었고 독도 영유권문제는 한일간 오랜 민족감정이 내포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히 협상이 진행된 것과는 달리 양국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자세를 견지한 관계로 협상결과는 지지부진하였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과 동시에 한중간의 어업협상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주변수역의 어업체제는 동시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어업협상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한일간의 어업협상에만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한일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독도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어업협상은 한일간의 어업협상이 주된 것이 되고, 국민적 분위기도 그에 편중되어 왔다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간의 어업실태 및 현재까지의 협상 진척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업협상의 우선순위는 한중간의 어업협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동해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 서해에서는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 많은 어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간의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어업협상에 적극적인데 비해 중국은 현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어업협상에 힘을 쏟아 어느 정도 진전시킨 다음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협상을 용이하게 이루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실리적인 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한일간의 어업회담에서 일본측에 적절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일간의 어업회담에서 중일간의 어업회담 진척을 선행조건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중간의 어업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일본을 통한 우회적인 촉구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일 어업협상 추진 방향

2.1. 관할권 문제

한일간에 있어서 상대수역에서의 조업 감독 및 관할권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이후 기국주의로 유지되어 왔다. 기국주의는 한일 어업협정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연안국주의였다. 당시 많은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본측 안인 기국주의가 채택된 것은 군사정부가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런 점에서 한일 어업협정은 일본측 안이 상당부분 수용된 불평등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30여년간 기국주의가 한일간의 어업체제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어업상황이 바뀔에 따라 연안국주의가 다시 주장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의해서였다. 이와 같은 연안국주의의 주장은 일본에 의해 어업

기조가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국내의 큰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업상황은 한일 어업협정 당시와 달리 우리 나라가 일본측 수역에 많이 조업하기 때문에 연안국주의로 회귀할 경우 우리 나라가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는 기국주의의 계속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어업관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연안국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칸쿤선언에서의 '책임있는 어업'의 의미나 FAO와 OECD에서의 권고적 사항 등은 연안국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어업관계에 있어서는 기국주의보다 연안국주의가 우리 나라에 더 큰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서해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어선보다 중국어선이 더 많이 조업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나라 연안까지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어 양국간 협력적 조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안국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중국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과의 어업관할권문제도 과감히 연안국주의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기국주의나 연안국주의를 번갈아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일본의 주장에 따를 수 없다는 국민감정문제 그리고 현재의 어업실태에 따른 실리적 문제 등의 이유로 연안국주의를 반대해왔지만 국제규범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대중국과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연안국주의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제4장에서 이미 살펴 본대로 연안국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일간 상호 상대수역에서의 어업실태를 감안하면 총량면에서는 결코 우리가 불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어획량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가 일본측 200해리 경제수역내에서 총230천M/T을 어획하고 일본이 우리측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145천M/T을 어획하여 우리 나라가 85천M/T 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해도에서의 어획량을 제외한 연근해어업만을 보면 오히려 12천M/T 가량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측 수역에서 일본이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어획모니터링은 우리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획금액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수역에서의 어획금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있어 우리 나라에 의한 어획모니터링이 크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 4-7>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측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우리 나라 총어획금액은 3,23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북해도에서의 원양어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일본측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만의 어획금액은 1,6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측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일본 총어획금액은 3,333억원으로 나타나 생산금액면에서는 일본이 두 배가량 높은 어획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우리 나라 수역에서 고가어를 많이 어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차 상호관리적 어업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모니터링이 보장되는 연안국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국주의와 관련되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어획할당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본 업종은 주로 대형선망어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 장차 어획할당제의 추세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획할당제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때 그 대상은 선망어업의 어획대상인 고등어, 전갱이 등이 유력하게 된다. 이 때 연안국주의가 채택된다면 일본에 의해 많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망어업에 대한 어획할당의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안국주의를 채택함에 있어서 선행조건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중국과의 연안국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의 어업 관할권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부 수락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2. TAC문제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어업협상에서 장차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서 TAC(Total Allowable Catch)문제가 있다. 이는 총허용어획량을 일컫는 말로써 어업자원관리방법중 양적인 관리방법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양적 어업관리방법은 전통적으로 어업허가에 의해 어업관리를 이루어왔던 한국과 일본에 있어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국제해양법하에서는 의무실행조건이 되고 있다. 어업허가에 의한 어업 관리방법은 양적 관리방법에 대응하여 질적 어업 관리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일간 양국은 새로운 어업 관리방법인 양적 어획 관리방법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양국 모두 전통적으로 질적 어획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혁을 꺼리는 경향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적 어획 관리방법을 불가피하게 채택하더라도 질적 어획 관리방법을 어느 정도 가미할 수 있는 TAC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실행방법으로서는 TAC의 대상어종은 혼획률이 높을 경우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혼획률이 낮은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국내법에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명태, 꽂치, 대게를 TAC 대상어종으로 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TAC 어종을 선택할 경우 혼획률이 낮고 일본이 우리 나라 수역에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어, 전갱이 등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3. 상호 입어문제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더라도 한일간 양국 어민들 모두 상호 입어 문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선망어업의 경우 우리 나라 남해수역에서의 계속 조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남해안에서의 조업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어업협상에서도 상호 입어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업협상에서 상호 입어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으로는 단순한 조업 척수 비교보다는 총어획량 또는 총어획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업 척수를 비교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 어선 척당 어획량이 우리 나라보다 많은 경향에 있으므로 단순한 척수 대비로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4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본 어업종류가 대형선망어업이나 저인망어업과 같이 대규모어업이 많은 반면 우리 나라는 대규모와 중규모 어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어 척수를 확보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연근해어업중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같은 어선 척수가 입어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어업이 많이 조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근해채낚기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등이 있었다.

3. 한중 어업협상 추진 방향

3.1. 어업회담에 나타난 양측 주장

1992년 양국 국교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 어업부문에 있어서도 양국간

어업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국의 상이한 정치, 경제, 문화 차이로 인해 협상은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 된 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 6-2>와 같다.

이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를 전제로 한 조기 협정 체결과 협정 체결시까지 양국 중간선을 경계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 합의시까지의 잠정어업협정을 체결하되, 영해 외측 수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하에서도 상호 입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업 척수나 허용 어업종류 등 실제 실행방법의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와 의견이 상충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2 한중간 어업협상에 나타난 양국간 주장

한 국	중 국
○ EEZ 체제를 전제로 한 조기협정 체결과 협정체결시까지 양국 중간선을 경계로 관할권 행사 입장을 전달	○ EEZ 경계선 합의시까지의 잠정어업협정을 체결, 영해외측수역을 공동관리할 것을 주장 ○ EEZ체제하에서도 상호입어 허용 입장 시사

3.2. 경계선 확정 및 관할권문제

중국은 한때 200해리 경제수역 경계선문제에서 대륙연장설을 주장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다. 대륙연장설이란 국제해양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일부 국가에 의해 주장되던 것으로서 해양 관할권은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대륙붕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에 의해 주장되던 것으로서 국제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 경제수역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버렸다.

중국은 이를 서해에 적용하기 위해 협상시 대륙연장설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주장의 근거는 서해에서 넓게 발달한 대륙붕은 중국의 황하에서 쏟아져 나온 토사에 의해 퇴적되었기 때문에 서해의 관할권도 당연히 대륙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에 의할 경우 서해의 3/4은 중국 관할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협상용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국제해양법이 발효됨으로써 그 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주장함으로써 협상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200해리 경제수역의 경계선 논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략의 하나로 제기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대륙연장설에 대한 주장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의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경계선문제는 국제해양법안대로 중간선에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를 수긍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중간선입장은 계속 고수되어져 할 것이다. 이는 중일간의 어업협정선도 중간선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관할권문제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협상 경우에서와 같이 연안국주위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국과의 연안국주의 관철이 대일본 협상에 대한 연안국주의의 전제조건이 된다.

3.3. 어업자원 관리 및 TAC문제

현재 중국도 서해에서의 어업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업자원 관리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200해리 경제체제를 긍정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어업협상에 있어서는 이 점을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공동인식은 어업협상에 활용될 수가 있다. 자원에 대한 공동인식이 어업협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어업 자원조사 및 전문가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자료나 데이터에 입각하여 한중간의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AC는 향후 한중일간 어업관리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한중간에도 TAC문제를 쟁점화하여야 할 것이다. TAC의 대상어종으로는 일본과의 경우에서와 같이 고등어, 전갱이 등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어, 전갱이와 같은 부어자원을 TAC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어업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즉, 중국의 어업정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어자원에 대해서는 관리정책을 추진한 반면 부어자원에 대해서는 증산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양면정책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수역에서 중국에 의한 부어자원 어획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이들 어종을 TAC어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4. 상호 입어문제

중국과의 상호 입어문제를 논함에 있어 우리 나라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종으로는 기선저인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업종별 어획실태 및 업종별 영향분석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중국측 업종자료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저인망 및 대형선망이 대부분을 점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조업자료는 입수되지 않았지만 제3장 <표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일본수역에서 조업중인 것으로 관찰된 중국 어선이 저인망과 선망어선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도 대부

분 저인망과 선망어선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간 상대수역에서의 어획량을 보면 중국이 300천M/T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171천M/T으로 추정되어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 1.8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획금액은 중국이 5,08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2,976억원으로 추정되어 중국이 1.7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중국의 어획량 배율이 어획금액 배율보다 높은 것은 우리 나라가 중국측 수역에서 어획하는 어종이 중국이 우리 나라에서 어획하는 어종보다 다소 고급어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간의 조업문제를 조업어선 척수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1,800척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1,482척으로 추정되어 중국이 1.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선척수 배율에 비해 어획량 배율이 크게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측이 부어를 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형선망에 의한 어획실적이 높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상호 입어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순한 어선척수 대비보다는 어획량에 입각한 어선 척수로 환산하여 입어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7 장

경제수역과 관련된 국내 어업 대책

1. 어선 감척

1.1. 기존 어선 감척 실태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명칭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근거는 적정한 어선세력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자원의 재생복원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목적도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어민소득 증대도모’로 설정하였다.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로 인한 어선 감척은 자원문제와는 관계없이 조업 가능한 어장의 절대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어선 감척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감척규모는 어업협상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척업종도 협상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다만 북해도 수역을 주조업어장으로 하고 있던 업종과 동서남 해역에서 어장을 상실하게 되는 업종에 있어서는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감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해리 경제수역과 어선 감척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선 감척사업의 실태를 보면 1994년도에 해선망이라고 불리웠던 연안 안강망 49척(972G/T)을 감척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근해어업인 대형선망 1통(2,064G/T)을 감척하였다.

아울러 1996년도에 대형선망 2통과 대형트롤 1통에 대한 감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1997년과 1998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척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즉, 1997년 이후에는 연안 안강망에 대한 추가적 감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근해어업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규모의 감척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결과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연안 안강망 및 근해업종 어선 32,090G/T이 감척계획에 잡혀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보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로 감척할 업종을 설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인 감척계획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둘러싼 어업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자원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200해리 경제수역의 협상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의 감척계획은 경제수역 협상에 있어 자칫 상대국에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2. 기존사업의 문제점

현재까지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어선 감척이 이루어지는데 장애요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번째 문제는 감척 보상금액의 과소를 들 수 있다. '감척 보상금액의 과소란 시가보다 낮은 보상금액으로 인해 감척 대상어업자들이 감척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선 감척에 대한 보상금액이 시가보다 과소한 것은 어업허가권에 대한 프리미엄적 성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현행 제도상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상금액은 현실유통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있으며, 어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감척을 기피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구체적 감척계획의 미확립으로 감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200해리와 관련된 어업협상의 측면에서는 장기적 감척계획의 발표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였지만 지속적인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 감척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감척계획의 미수립은 감척 대상업종의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감척사업이 오히려 어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1.3. 향후 추진 방향

감척 보상금액 현실화문제의 바탕은 어업허가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업허가가격에는 어선가격뿐만 아니라 어업허가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를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감척 보상금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어업허가권에 대한 프리미엄문제는 어업허가권을 '어업권'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어업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감척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어업자들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 감척계획 수립문제는 개별어업자의 입장에서 예측성을 높여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업종을 어느 만큼 감척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해 업종내에서는 어선별 감척순위까지를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어업자들이 언제 감척할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계획이나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어선 감척에 있어서는 200해리 경제수역에 의해 어업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심으로 감척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표 7-1>에서와 같이 제5장에서 살펴본 각 시나리오별 매출액이익률과 자본감안이익률을 고려할 때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감척이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1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수익률
단위: %

업 종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자본감안 이익률
대형기저쌍끌이	7.0	- 3.3	- 74.6	- 72.6	- 74.6	- 72.3
대형기저외끌이	- 10.7	- 35.5	16.6	16.6	- 10.7	- 35.5
대 형 선 망	- 35.1	- 40.4	- 24.0	- 24.0	- 38.8	- 42.1
근 해 안 강 망	12.4	10.1	- 8.5	27.7	- 8.5	- 27.7
근 해 채 낚 기	- 17.7	- 32.0	- 18.7	- 32.8	- 139.3	- 72.5
서 남 구 기 저	21.3	18.7	16.8	9.7	- 6.0	- 21.5
근 해 통 발	21.8	14.5	-481.2	- 88.6	-1091.2	- 95.0

2. 효율적 어업관리제도(TAC제도)의 도입

2.1. 일본의 TAC제도 실시 동향

일본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TAC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는 비단 200해리 경제수역이 아니더라도 OECD 수산위원회 등에서 어획할당제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인 일본의 입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어획할당제에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발표된 TAC 관련 내용으로는 1995년 12월에 수산청 해양법연구회에 의해 TAC 대상어가 선정, 발표되었다. 당시 선정된 어종으로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명태, 꽂치,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의 8개 어종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양법연구회에 의한 연구결과로서 정책결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편 1996년 7월 20일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해 TAC제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이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 1월부터 TAC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상 어종은 당초 해양법연구회에서 발표된 어종중 오징어와 붉은대게는 혼획률이 높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TAC제도의 실시방법

우리 나라에 있어 TAC와 관련된 제도로는 1995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을 들 수 있다. 1995년의 개정에 의해 TAC 도입에 대한 법적 가능성이 수산업법에 마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도 언제라도 TAC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TAC의 대상어 선정방법으로는 어획량이 많고 자원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 어획경쟁이 심한 어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영덕대게 등은 동해 및 남해에서 일본이 많이 어획하고 있으며, 고등어, 전갱이, 갈치, 참조기, 도미 등은 서해 및 남해에서 중국이 많이 어획하고 있으므로 이들 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200해리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고등어, 말쥐치, 참조기, 삼치, 부세, 병어, 삼치, 명태, 정어리, 오징어, 꽁치, 도루묵의 12개 어종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적으로는 대부분의 어종에 대해 TAC를 실시하여야 하나 우선은 경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에 의해 우리 나라 어장에서 많은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참조기, 갈치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획할당제 자체가 새로이 시도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1~2개 어종을 택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AC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으로는 과거 어획실적과 자원량을 토대로 TAC 물량을 결정하되, 과거의 어획량보다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급격한 TAC 물량 감소로 국내 어업자의 반발을 줄임과 동시에 협상 당사국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TAC문제는 어업자원문제와 현실의 어업동향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업동향에는 어업정책문제와 어업경영·경제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TAC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TAC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 보다는 해양수산부 또는 수산진흥원내에 위원회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빈

면

부록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중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내용(해양법 제5부)

빈

면

**부록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중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내용(해양법 제5부)**

제55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별한 법 제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 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 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b)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ii) 해양과학조사
 -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

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58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87조에 규정된 항행 ·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 관선 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 · 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제88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의 적절한 규칙은 이 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9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 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a) 인공섬
 - (b)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 (c)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3. 이러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4.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5. 연안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6.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안전수역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7.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1조

생물자원의 보존

1.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최대지속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유지·회복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어업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 요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어로방식·어족간의 상호 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준 등 어느 기준에서 보나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 최소기준을 고려한다.

4.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어획되는 어종에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의 자원량이 중대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 이상으로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연관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그 밖의 자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 아래 적절히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제62조

생물자원의 이용

1. 연안국은 제6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한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연안국이 전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을 통하여 제4항에 언급된 조건과 법령에 따라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연안국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특히 이러한 규정이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그 수역의 생물자원이 연안국의 경제와 그 밖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중요성,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잉여자원 어획에 관한 소지역내 또는 지역내 개발도상국의 요구 및 소속 국민이 그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여 왔거나 어족의 조사와 식별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법령은 이 협약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될 수 있다.
 - (a) 어부에 대한 조사 허가, 어선과 조사 장비의 허가(이러한 허가조치에는 수수료나 다른 형태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며, 개발도상국 연안국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금융·장비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b) 어획가능한 어종의 결정 및 어획할당량의 결정(특정한 어족, 어족의 무리,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선당 어획량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느 국가의 국민에 의한 어획량으로 산정되는 어획할당량)
 - (c) 어로기간, 어로수역, 어구의 종류·크기 및 수량 그리고 사용 가능한 어선의 종류·크기 및 척수의 규제
 - (d) 어획 가능한 어류와 그 밖의 어종의 연령과 크기의 결정
 - (e) 어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어선위치 보고 포함)
 - (f) 연안국의 허가과 통제에 따른 특정한 어업조사계획의 실시 요구와 이러한 조사(어획물의 견본작성, 견본의 처리 및 관련 과학조사자료 보고를 포함) 실시의 규제
 - (g) 연안국에 의한 감시원이나 훈련원의 어선에의 승선 배치

- (h) 이러한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전부나 일부를 연안국의 항구에 내리는 행위
 - (i) 합작사업이나 그 밖의 협력약정에 관한 조건
 - (j) 연안국의 어로조사 수행능력 강화를 포함한 인원 훈련과 어로기술의 이전 조건
 - (k) 시행절차
5. 연안국은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절히 공시한다

제63조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

1.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고도회유성 어종

1. 연안국과 제1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서 그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적절한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과 같은 수역에서 이러한 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2. 제2항의 규정은 이 부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65조

해양포유동물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66조

소하성 어족

1. 소하성 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는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2. 소하성 어족의 기원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의 육지쪽 모든 수역에서의 어로와 제3항 (b)에 규정된 어로에 관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그 어족의 보존을 보장한다. 기원국은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다른 국가와 협의한 후 자

- 국 하천에서 기원하는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3. (a) 이 규정으로 인하여 기원국 이외의 국가에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성 어족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 밖의 어획에 관하여 관련국은 그 어족에 관한 기원국의 보존 요건 및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어로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유지한다.
 - (b) 기원국은 소하성 어족을 어획하는 다른 국가의 통상적인 어획량 조업방법 및 모든 조업실시지역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 (c) (b)에 언급된 국가가 기원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특히 그 경비분담 등 소하성 어족을 재생시키는 조치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기원국은 자국의 하천에서 기원한 그 어족의 어획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한다.
 - (d)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소하성 어족에 관한 규칙은 기원국과 다른 관련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소하성 어족이 기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의 육지쪽 수역을 통하여 회유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는 그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기원국과 협력한다.
 5. 소하성 어족의 기원국과 이를 어획하는 그 밖의 국가는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67조

강하성 어종

1. 강하성 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그 어

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한다.

2. 강하성 어종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 조의 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획에 관한 이 협약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
3. 강하성 어종이 치어로서 또는 성어로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회유하는 경우 어획을 포함한 그 어종에 대한 관리는 제1항에 언급된 국가와 그 밖의 관련국간의 합의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합의는 강하성 어종의 합리적 관리를 보장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다.

제68조

정착성 어종

이 부는 제77조 제4항에서 정의한 정착성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내륙국의 권리

1. 내륙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관련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평에 입각하여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참여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 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수립된다.
 -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내륙국이 기존의 양자 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 (c) 다른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3.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개발도상 내륙국이 그 소지역 또는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도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 내륙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 선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 내륙국은 그 선진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민이 있는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5.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내륙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1. 지리적 불리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부에서 “지리적 불리국”이라 함은 폐쇄해나 반폐쇄해에 접한 국가를 포함한 연안국으로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국 주민 또는 그 일부의 영양상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어류 공급을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여야 하거나,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연안국을 말한다.
3. 이러한 참여의 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 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확립된다.
 -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불리국이 기존의 양자 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 (c) 다른 지리적 불리국과 내륙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4.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를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3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 지리적 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선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 지리적 불리국은 그 선진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소속 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6.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지리적 불리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제69조 제70조 적용의 배제

제69조 제70조의 규정은 연안국의 경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권리 이전의 제한

1. 제69조와 제70조에 규정한 생물자원 개발 권리는 관계국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나 면허, 합작사업의 설립 또는 권리 이전의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3국이나 그 밖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언급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관련국이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따를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연안국 법령의 시행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 국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 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제74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확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75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선 및 제75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 한계선이나 경계획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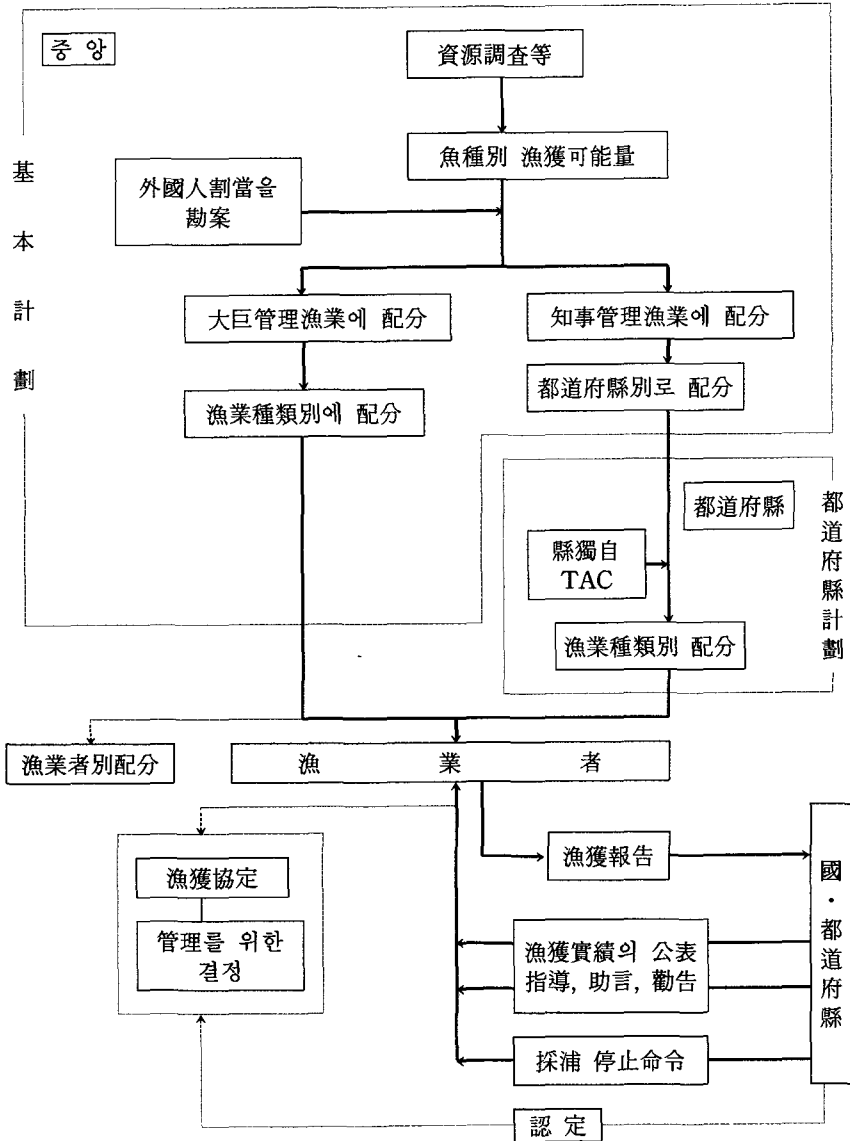
면

부록 2 일본 어획가능량제도의 개념도

빈

면

부록 2 일본 어획가능량제도의 개념도



부표 1 경제수역과 관련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실태, 1994

단위: 천엔, %

구 분	이서저인망 (동중국해)	충합저인망 (일본해구)	충합저인망 (동중국해)	중형선망 (일본해구)	대형선망 (동중국해)	오징어채낚기 (일본해구)
어업수입	326,380	115,495	249,882	203,186	1,027,227	137,253
지출						
선원 임금	107,261	37,697	89,459	64,451	319,0996	41,639
선내 식료	6,214	1,446	5,482	2,815	10,7396	2,982
복리후생비	24,196	7,931	11,674	17,003	53,6956	4,987
기타임금성	25	119	1,164	0	0	618
어선수리비	42,835	10,292	16,283	11,088	109,002	15,977
어 구 비	16,858	6,613	34,040	3,577	10,515	6,135
유 류 대	49,123	11,961	35,750	13,389	149,132	13,567
이 료 대	0	0	0	0	0	0
얼 음 대	508	938	4,580	9,168	59,354	63
어 상 자	12,353	2,059	8,021	4,428	46,318	968
제 재료비	4,524	383	3,893	12	20,467	822
제 시설비	0	0	0	0	323	81
임 차 료	40,252	1,062	3,458	15,486	29,440	829
판매수수료	23,701	7,532	12,442	14,885	58,998	6,391
사 무 비	17,779	4,860	27,483	34,615	89,267	7,928
기타어업비	29,913	9,715	18,788	20,400	172,308	9,518
감가상각비	8,411	4,333	10,211	17,382	13,243	6,401
어업외비용	0	0	0	0	0	0
소 계	383,953	106,941	282,728	228,699	1,141,900	118,906
어업이익	- 57,573	8,554	-32,846	-25,513	-114,673	18,347
어업이익률	-17.6	7.4	-13.1	-12.6	-11.2	13.4
투 하 자 본	390,518	109,860	311,206	198,871	1,638,492	87,874
자 본 이 자	19,526	5,493	15,560	9,944	81,925	4,394
자본이익액	-77,099	3,061	-48,406	-35,457	-196,598	13,953
자본이익률	-19.7	2.8	-15.6	-17.8	-12.0	15.9

1) 이서저인망은 100-200톤 기준.

2) 충합저인망은 50-100톤 기준.

3) 중형선망은 ㄱㄱㄱ網으로서 10-30톤 기준.

4) 대형선망은 100-200톤 기준.

5) 오징어채낚기는 100-300톤 기준.

6) 대형선망의 임금, 선내식료, 복리후생비는 중형선망의 비율로 배분.

7) 자본이자율은 5%.

자료: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漁業經濟調査報告(企業體の部)」, 1996에서 각각 작성.

부표 2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시 일본 업종별 어업경영수지 변화

단위: 천円, %

구 분		이서저인망 (동중국해)	총합저인망 (일본해구)	총합저인망 (동중국해)	중형선망 (일본해구)	대형선망 (동중국해)	오징어채낚기 (일본해구)
어업수입		283,265	104,326	249,882	176,539	697,247	130,017
지출	선원임금	100,176	35,874	89,459	60,225	267,846	40,541
	선내식료	6,214	1,446	5,482	2,815	10,739	2,982
	복리후생비	24,196	7,931	11,674	17,003	53,695	4,987
	기타임금성	25	119	1,164	0	0	618
	어선수리비	42,835	10,292	16,283	11,088	109,002	15,977
	어 구 비	16,858	6,613	34,040	3,577	10,515	6,135
	유 류 대	49,123	11,961	35,750	13,389	149,132	13,567
	이 료 대	0	0	0	0	0	0
	얼 음 대	441	847	4,580	7,966	40,287	60
	어 상 자	10,721	1,860	8,021	3,847	31,439	917
	제재료비	4,524	383	3,893	12	20,467	822
	제시설비	0	0	0	0	323	81
	임 차 료	40,252	1,062	3,458	15,486	29,440	829
	판매수수료	20,570	6,804	12,442	12,933	40,046	6,054
	사 무 비	17,779	4,860	27,483	34,615	89,267	7,928
	기타어업비	29,913	9,715	18,788	20,400	172,308	9,518
	감가상각비	8,411	4,333	10,211	17,382	13,243	6,401
	어업외비용	0	0	0	0	0	0
소 계		372,039	104,100	282,728	220,738	1,037,750	117,417
어업이익		-88,774	226	-32,846	-44,198	-340,503	12,600
어업이익률		-31.3	0.2	-13.1	-25.0	-48.8	9.7
투하자본		390,518	109,860	311,206	198,871	1,638,492	87,874
자본이자		19,526	5,493	15,560	9,944	81,925	4,394
자본이익액		-108,299	-5,267	-48,406	-54,142	-422,428	8,206
자본이익률		-27.7	-4.8	-15.6	-27.2	-25.8	9.3

자료: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漁業經濟調査報告(企業體の部)」, 1996에서 각각 작성.

부표 3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국 업종별 어업경영실태(1), 1994

단위: 천원, %

구 분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장망
어업수입		1,058,793	284,710	1,050,761	3,571,715	376,449
지출	선원임금	276,941	83,243	256,720	1,041,320	114,790
	선내식료	37,295	9,426	21,196	104,463	13,438
	복리후생비	21,451	5,723	19,290	91,921	5,093
	기타임금성	35,578	8,162	45,476	146,156	6,915
	어선수리비	143,903	39,206	110,929	281,865	24,853
	어 구 비	53,617	9,420	33,507	205,682	35,604
	유 류 대	171,147	21,985	118,929	485,760	31,475
	이 료 대	0	0	0	0	0
	얼 음 대	25,074	8,113	31,275	208,156	13,681
	어 상 자	28,613	5,913	29,015	283,814	11,212
	제재료비	39,616	8,002	30,229	126,495	10,571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19,615	6,154	15,970	191,482	16,528
	판매수수료	52,465	13,592	55,364	182,005	20,928
	사 무 비	30,110	6,847	24,261	151,202	5,939
	기타어업비	12,941	1,933	12,172	61,739	2,852
	감가상각비	25,687	5,629	33,632	136,229	8,262
	어업외비용	10,272	4,205	12,102	132,737	7,671
	소 계	984,325	237,553	850,067	3,831,026	329,812
당기 순이익		74,468	47,157	200,694	-259,311	46,637
매출액이익률		7.0	16.6	19.1	- 7.3	12.4
투 하 자 본		635,332	101,833	544,715	3,574,088	185,766
자 본 이 자		95,300	15,275	81,707	536,113	27,865
자본감안순이익액		-20,832	31,882	118,987	-795,424	18,772
자본감안순이익률		-3.3	31.3	21.8	-22.3	10.1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4 경제수역과 관련된 한국 업종별 어업경영실태(2), 1994

단위:천원, %

구 분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
어업수입		351,338	74,885	451,330	308,239	107,770
지출	선원임금	147,937	21,420	113,347	56,803	5,435
	선내식료	11,506	2,394	11,042	11,917	4,481
	복리후생비	3,419	690	6,850	5,703	1,625
	기타임금성	7,479	1,203	9,195	2,357	1,228
	어선수리비	18,184	2,419	23,519	16,955	2,853
	어 구 비	13,497	4,082	21,271	14,551	4,674
	유 류 대	42,332	4,499	42,829	23,009	7,572
	이 료 대	0	0	0	0	0
	얼 음 대	0	520	7,403	4,953	1,828
	어 상 자	2,083	2,817	5,139	1,968	2,132
	제재료비	2,020	1,840	6,570	63,998	2,324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6,285	937	14,527	3,883	1,875
	판매수수료	16,799	3,321	15,134	8,264	5,625
	사 무 비	4,258	557	6,357	2,683	758
	기타어업비	2,099	189	1,980	1,253	433
	감가상각비	12,959	1,994	10,230	8,614	3,126
	어업외비용	7,463	1,277	6,752	3,807	1,055
	소 계	298,320	50,159	302,145	230,718	87,024
당 기 순 이 익		53,018	24,726	149,185	77,521	20,746
매출액이익률		15.1	33.0	33.1	25.1	19.3
투 하 자 본		233,959	85,193	229,746	215,873	89,868
자 본 이 자		35,094	12,779	34,462	32,381	13,480
자본감산순이익액		17,924	11,947	114,723	45,140	7,266
자본감산순이익률		7.7	14.0	49.9	20.9	8.1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5 시나리오 I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단위: 천원, %

구 분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장망
어업수입		1,058,793	194,761	950,689	2,594,698	376,449
지출	선원임금	276,941	70,093	244,495	898,897	114,790
	선내식료	37,295	9,426	21,196	104,463	13,438
	복리후생비	21,451	5,723	19,290	91,921	5,093
	기타임금성	35,578	8,162	45,476	146,156	6,915
	어선수리비	143,903	39,206	110,929	281,865	24,853
	어 구 비	53,617	9,420	33,507	205,682	35,604
	유 류 대	171,147	21,985	118,929	485,760	31,475
	이 료 대	0	0	0	0	0
	얼 음 대	25,074	5,550	28,296	151,216	13,681
	어 상 자	28,613	4,045	26,252	206,176	11,212
	제재료비	39,616	8,002	30,229	126,495	10,571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19,615	6,154	15,970	191,482	16,528
	판매수수료	52,465	9,298	50,091	132,219	20,928
	사 무 비	30,110	6,847	24,261	151,202	5,939
	기타어업비	12,941	1,933	12,172	61,739	2,852
	감가상각비	25,687	5,629	33,632	136,229	8,262
	어업외비용	10,272	4,205	12,102	132,737	7,671
소 계		984,325	215,678	826,828	3,504,242	329,812
당 기 순이 익		74,468	-20,917	123,861	-909,544	46,637
매출액 이익률		7.0	-10.7	13.0	-35.1	12.4
투 하 자 본		635,332	101,833	544,715	3,574,088	185,766
자 본 이 자		95,300	15,275	81,707	536,113	27,865
자본감산순이익액		-20,832	-36,192	42,154	-1,445,658	18,772
자본감산순이익률		-3.3	-35.5	7.7	-40.4	10.1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6 시나리오 I 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단위: 천원, %

구 분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
어업수입		225,079	71,334	362,975	292,172	107,770
지출	선원임금	121,355	20,912	102,252	55,323	45,435
	선내식료	11,506	2,394	11,042	11,917	4,481
	복리후생비	3,419	690	6,850	5,703	1,625
	기타임금성	7,479	1,203	9,195	2,357	1,228
	어선수리비	18,184	2,419	23,519	16,955	2,853
	어 구 비	13,497	4,082	21,271	14,551	4,674
	유 류 대	42,332	4,499	42,829	23,009	7,572
	이 료 대	0	0	0	0	0
	얼 음 대	0	495	5,954	4,695	1,828
	어 상 자	1,334	2,683	4,133	1,865	2,132
	제재료비	2,020	1,840	6,570	63,998	2,324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6,285	937	14,527	3,883	1,875
	판매수수료	10,762	3,163	12,171	7,833	5,625
	사 무 비	4,258	557	6,357	2,683	758
	기타어업비	2,099	189	1,980	1,253	433
	감가상각비	12,959	1,994	10,230	8,614	3,126
	어업외비용	7,463	1,277	6,752	3,807	1,055
	소 계	264,953	49,335	285,632	228,446	87,024
당 기 순 이 익		-39,874	21,998	77,343	63,725	20,746
매출액 이익률		-17.7	30.8	21.3	21.8	19.3
투 하 자 본		233,959	85,193	229,746	215,873	89,868
자 본 이 자		35,094	12,779	34,462	32,381	13,480
자본감안순이익액		-74,968	9,219	42,881	31,345	7,266
자본감안순이익률		-32.0	10.8	18.7	14.5	8.1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7 시나리오 II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단위: 천원, %

구 분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어업수입		488,333	284,710	975,707	3,480,527	279,577
지출	선원임금	202,335	83,243	247,557	1,028,027	100,021
	선내식료	37,295	9,426	21,196	104,463	13,438
	복리후생비	21,451	5,723	19,290	91,921	5,093
	기타임금성	35,578	8,162	45,476	146,156	6,915
	어선수리비	143,903	39,206	110,929	281,865	24,853
	어구비	53,617	9,420	33,507	205,682	35,604
	유류대	171,147	21,985	118,929	485,760	31,475
	이료대	0	0	0	0	0
	얼음대	1,157	8,113	29,041	202,842	10,161
	어상자	13,197	5,913	26,943	276,568	8,327
	제재료비	39,616	8,002	30,229	126,495	10,571
	제시설비	0	0	0	0	0
	임차료	19,615	6,154	15,970	191,482	16,528
	판매수수료	24,198	13,592	51,409	177,358	15,543
	사무비	30,110	6,847	24,261	151,202	5,939
	기타어업비	12,941	1,933	12,172	61,739	2,852
	감가상각비	25,687	5,629	33,632	136,229	8,262
	어업외	10,272	4,025	12,102	132,737	7,671
소계		852,526	237,373	832,637	3,800,526	303,251
당기 순이익		-364,194	47,337	143,069	-319,999	-23,674
매출액이익률		-74.6	16.6	14.7	-9.2	-8.5
투자자본		635,332	101,833	544,715	3,574,088	185,766
자본이자		95,300	15,275	81,707	536,113	27,865
자본감산순이익액		-459,493	32,062	61,362	-856,113	-51,539
자본감산순이익률		-72.6	31.5	11.3	-24.0	-27.7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8 시나리오 II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단위: 천원, %

구 분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
어업수입		222,783	64,941	337,731	33,001	80,394
지출	선원임금	120,872	19,998	99,082	31,442	39,664
	선내식료	11,506	2,394	11,042	11,917	4,481
	복리후생비	3,419	690	6,850	5,703	1,625
	기타임금성	7,479	1,203	9,195	2,357	1,228
	어선수리비	18,184	2,419	23,519	16,955	2,583
	어 구 비	13,497	4,082	21,271	14,551	4,674
	유 류 대	42,332	4,499	42,829	23,009	7,572
	이 료 대	0	0	0	0	0
	일 음 대	0	451	5,540	530	1,364
	어 상 자	1,321	2,443	3,846	211	1,590
	제재료비	2,020	1,840	6,570	63,998	2,324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6,285	937	14,527	3,883	1,875
	판매수수료	10,652	2,880	11,325	885	4,196
	사 무 비	4,258	557	6,357	2,683	758
	기타어업비	2,099	189	1,980	1,253	433
	감가상각비	12,959	1,994	10,230	8,614	3,126
	어업외비용	7,463	1,277	6,752	3,807	1,055
	소 계	264,346	47,853	280,914	191,798	78,819
당기 순이익		-41,563	17,088	56,816	-158,797	1,576
매출액이익률		- 18.7	26.3	16.8	-481.2	2.0
투 하 자 본		233,959	85,193	229,746	215,873	89,868
자 본 이 자		35,094	12,779	34,462	32,381	13,480
자본감안순이익액		-76,657	4,309	22,355	-191,178	-11,905
자본감안순이익률		- 32.8	5.1	9.7	- 88.6	- 13.2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9 시나리오 Ⅲ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1)

단위: 천원, %

구 분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장망
어업수입		488,333	194,761	875,634	2,503,509	279,577
지출	선원임금	202,335	70,094	235,327	885,604	100,021
	선내식료	37,295	9,426	21,196	104,463	13,438
	복리후생비	21,451	5,723	19,290	91,921	5,093
	기타임금성	35,578	8,162	45,478	146,156	6,915
	어선수리비	143,903	39,206	110,929	281,865	24,853
	어구비	53,617	9,420	33,507	205,682	35,604
	유류대	171,147	21,985	118,929	485,760	31,475
	이료대	0	0	0	0	0
	얼음대	11,565	5,550	26,063	145,902	10,161
	어상자	13,199	4,045	24,179	198,933	8,327
	제재료비	39,616	8,002	30,229	126,495	10,571
	제시설비	0	0	0	0	0
	임차료	19,615	6,154	15,970	191,482	16,528
	판매수수료	24,198	9,298	46,137	127,572	15,543
	사무비	30,110	6,847	24,261	151,201	5,939
	기타어업비	12,941	1,933	12,172	61,739	2,852
	감가상각비	25,689	5,629	33,632	136,229	8,262
	어업외비용	10,272	4,205	12,102	132,737	7,671
	소계	852,526	215,678	809,398	3,473,742	303,251
당기 순이익		-364,194	-20,917	66,236	-970,233	-23,674
매출액이익률		-74.6	-10.7	7.6	-38.8	-8.5
투자자본		635,332	101,833	544,715	3,574,088	185,766
자본이자		95,300	15,275	81,707	536,113	27,865
자본감안순이익액		-459,493	-36,192	-15,471	-1,506,346	-51,539
자본감안순이익률		-72.3	-35.5	-2.8	-42.1	-27.7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부표 10 시나리오 Ⅲ에 의한 한국 업종별 어업 영향(2)

단위: 천원, %

구 분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연승
어 업 수 입		96,523	61,386	249,376	16,933	80,394
지출	선원임금	94,290	19,490	87,988	29,962	39,664
	선내식료	11,560	2,394	11,042	11,917	4,481
	복리후생비	3,419	690	6,850	5,703	1,625
	기타임금성	7,479	1,203	9,195	2,357	1,228
	어선수리비	18,184	2,419	23,519	16,955	2,853
	어 구 비	13,497	4,082	21,271	14,551	4,674
	유 류 대	42,332	4,499	42,829	23,009	7,572
	이 료 대	0	0	0	0	0
	얼 음 대	0	426	4,090	272	1,364
	어 상 자	752	2,309	2,839	108	1,590
	제재료비	2,020	1,840	6,570	63,998	2,324
	제시설비	0	0	0	0	0
	임 차 료	6,285	937	14,527	3,883	1,875
	판매수수료	4,615	2,722	8,362	454	4,196
	사 무 비	4,258	557	6,357	2,683	758
	기타어업비	2,099	189	1,980	1,253	433
	감가상각비	12,959	1,994	10,230	8,614	3,126
	어업외비용	7,463	1,277	6,752	3,807	1,055
	소 계	230,978	47,029	264,402	189,526	78,819
당기순 이익		-134,455	14,360	-15,026	-172,593	1,576
매출액이익률		-139.3	23.4	-6.0	-1,091.2	2.0
투 하 자 본		233,959	85,193	229,746	215,873	89,868
자 본 이 자		35,094	12,779	34,462	32,381	13,480
자본감안순이익액		-169,549	1,581	-49,488	-204,973	-11,905
자본감안순이익률		-72.5	1.9	-21.5	-95.0	-13.2

자료: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에서 각각 작성.

참 고 문 헌

- 국립수산진흥원, 「연근해 주요 어업별 어획동향 및 평가」, 수산자원조사
보고 제17호, 1996.
- 문준조·이용일, 「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의 해양관련법 개정방향」, 한국
법제연구원, 1995.
- 박구병, 「한국어업사」, 정음사, 1975.
- 박성쾌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수산청, 1992.
- 옥영수, 「다국간이용 어업자원에 대한 적정어획 관리방안 연구」, 부산수
산대학 박사학위 논문, 1994.
- 외무부, 「어업협력협정집」 집무자료 77-196, 1997.
- , 「제주도와 북해도의 주변수역 조업문제」 집무자료 81-36, 1981.
- 大日本 水産會, 「200海里概史」, 1983.
-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九州大學出版部, 1988.
- 小野征一郎·堀口健治, 「日本漁業の經濟分析-縮小と再編の論理-」, 農林統
計協會, 1992.
- 水上千之, 「日本と海洋法」, 有信堂, 1995.
- Gordon R. Munro, "The Optima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newable Resources", C.J.E. Vol. 12, 1980.
- Lee G. Anderson, "Optimum Yield of an Internationally Utilized Common Property Resource" Fishery Bulletin, Vol. 73, No. 1, 1975.

연구보고 R344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 어업대책

찍은날 1996. 11. 펴낸날 1996. 11.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1310-7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6 년 11 월 18 일 100 부발간	
발간업체명	京洋文化印刷株式会社 737-2101~5
대 표 자 명	대 표 이 사 윤 병 태
인 가 근 거	조 내 이 2066 - 16884 (1971. 7. 28)
참 여 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1 급 전 문 원 윤 중 덕